

납세자의 불만을 처리하는 한 방법으로 강구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자변의 원칙은 전화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의료비도 표준진료비 3불, 처방시 또 3불을 받는다. 돈이 없어 못낼 때는 받을 수 없지만, 만약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다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청구한다고 모든 선량한 시민들이 식사, 의료,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없듯이 이들 재소자들의 기본비용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그럴 듯하나, 이것도 범죄자에 대한 불관용을 입증하는 보수적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캠퍼스 속의 기숙사형 시설

— 샌프란시스코의 여성수용시설

1999. 2. 18.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달려 더블린 시에 도착하니, 거기에는 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Santa Rita Jail, 그리고 Federal Training Camp 등 교정관계 시설이 여럿 들어서 있어 클로라도 주의 Florence 시처럼 교정공화국이라 부를 만한 곳임을 알았다. 대형 건물 주위에 날카로운 철조망을 이중으로 둘러친 것 역시 참관인들을 긴장시킨다.

먼저 방문한 곳은 더블린 연방교도소(Dublin 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여기는 여성 재소자들을 수용한다. 마약관련 사범이 가장 많고(81%), 그 외에도 살인 등 중범죄자도 수용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교도소의 경비 등급의 분류에 약간의 차이를 둔다. 남성의 경우 輕경비(minimum), 중간경비(medium), 重경비(maximum) 등으로 구분하나 여성의 경우 경비등급 면에서 큰 차이를 들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내의 갈등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르지 않으며, 여성 재소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상세한 등급 구분을 하지 않은 경향이다. 대체로 낮은 위험(low risk), 높은 위험(high risk)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여기 연방교도소처럼 구분 없이 함께 수용하기도 한다.

입구에 들어서니 공보관격인 Gutierrez씨가 맞았다. 입구에서 예외없이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손등에 도장을 찍고 카메라와 가방을 보관시킨 뒤에야 안으로 들어감이 허용되었다.

행정동을 벗어나자마자 눈에 확 띄는 것은 넓직한 잔디밭이다. 그 잔디밭을 둘러싸고 재소자들이 거주하는 건물들이 대학 캠퍼스 건물처럼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인 인상은 대학 캠퍼스라 해도 그대로 믿을 정도다.

먼저 Unit F라 불리는 한 사동을 방문했다. 모든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철격자가 보이지 않는다. 건물은 철창이 아니라 큰 유리로 되어 있어 교도소 건물 특유의 긴장과 저항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안으로 들어서니 중앙부에 넓적한 휴게실이 있고, 가장자리 편의 1층, 2층에 거실이 자리잡고 있다. 잔디밭, 유리로 된 건물, 휴게실, 거실 배치를 보면 대학기숙사와 같다고 했더니, 사실 수용인원이 감축되면 그런 방식으로 전용할 것도 의도하고 지어졌으나 과밀수용 문제로 인해 현실화는 요원하다고 웃음지었다.

Unit F에는 300명을 수용한다. 방이 모두 100개이므로 한 거실에 3명이 살고 있는 셈. 그러나 일률적으로 3명씩 사는 것이 아니라, 입소시에 4명 1실로 하다, 6개월 정도 지나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3명 1실로 다시 시간경과와 행정개선에 따라 2인 1실에 배치시켜 주는 특전을 베푼다. 각 거실에는 2층 침대가 2쌍 있었으며(3인실에는 2층 침대 1대와 1층침대가 놓여있다), 고정된 화장실, 의자와 책상, 세면기, 작은 옷장이 비치되어 있다. 샤워룸은 따로 있었고 세탁실에는 2대의 세탁기, 3대의 건조기가 놓여있다. 전화는 사동 내에서 누구든 자기 비용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15분 지나면 전화가 자동적으로 끊어진다.

전화내용은 녹음되며 선별적으로 감청된다. 편의시설을 주정부 시설과 비교하면 어떠나의 질문에, 아무래도 연방정부의 시설은 주정부보다 훨씬 잘 지어지는 편이라고 답변.

여성 교도소라 그런지 교도소 특유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도 특징.

재소자들은 화장품을 소지하고 있으며, 진하고 예쁘게 화장한 모습도 도처에 눈에 띄었다. 미용실도 사동마다 있고, 다리미도 놓여있다. 조그마한 체련실에는 운동용 자전거가 눈에 편다.

사동마다 TV는 총 3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일반 TV, 히스페닉용 TV, 그리고 연속극이나 드라마가 나오는 TV로 용도가 구분된다.

지출을 위해서는 debit card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것을 이용해 자판기에서 콜라류와 과자류를 사먹을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매점에는 작업시간 외에 가서 물품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현금을 소지하면 직원 매수, 영향력 확대, 도박 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현금소지는 엄격히 금지된다. 데빗 카드를 사용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전의 사용내역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각 사동당 보안담당 직원은 단 1명이며, 2명의 카운셀러, 2명의 case manager, 1명의 unit manager가 재소자의 교회를 담당한다. 역시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통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재소자를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작업은 하루 7.5시간 할당됨. 대부분의 작업은 교도소 관리와 관계된 것으로, 취사 청소 등 보조적 일이며 회계사무를 보조하기도 한다.

재소자 중 1/4 정도는 소내 공장에서 작업한다. 미국내의 교도소 공장은 UNICOR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¹⁰⁾ 작업종류를 보니 cut & sew라 하여 커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필요한 우편물을 발송하는 데 필요한 우편박스 제작, 그리고 의자제작작업 등이 있다.

그 의자는 연방정부의 접기로 사용된다. 가구제작공장도 눈에 띤다. 작업도구는 미싱 및 약간의 기계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조립용 작업과 단순 기능작업이므로 그 작업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기 어려울 듯.

¹⁰⁾ UNICOR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고드작업 본부로, 소내 생산을 통한 자금자족을 목표로 하며 그문 위해 독립체신체로 운영된다.

한편에서는 컴퓨터 훈련 및 컴퓨터작업을 수행한다. 사실 컴퓨터는 교도 작업과 직업훈련을 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컴퓨터는 모두 50대. 여러 학급이 운영되며, 그 중에서는 아무 것도 모른 상황에서 타이핑부터 시작하여 2년 정도면 복잡한 도면 그리기를 비롯한 모든 작업을 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한다.

작업내용은 연방정부의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문건의 타이핑, 도면 그리기 등을 하고 있었다.¹⁰⁾ 컴퓨터 직종은 재소자들의 자원을 받아 선택하도록 한다고 전체 작업의 강도는 다소 느슨한 느낌이다. 공장내에서는 의무량을 할당해서 일하고 있으나, 밖에서 청소 취사 등의 일은 느슨하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다.

임금은 (스웨덴 등과는 달리) 거의 주어지지 않은 것 같다. 월 5불 25센트 정도이며, 기본적 물자는 교도소에서 제공해주므로 재소자들이 쓸 필요가 없다고 하나, 재소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식사는 식당에서 하며 식당은 한꺼번에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식사시간은 30분이며 교대로 식사한다. 식사종류는 야채식과 더운 음식 중에서 택일한다. 야채식을 보니 셀러드용 생야채 8가지, 데운 야채 5가지, 드레싱 3가지, 커피, 콜라 등을 자기 양만큼 뷔페식으로 골라 먹게 되어 있고, 맛을 보니 꽤찮은 것 같았다. 식사시간에는 직원들도 동식하는 경우가 많고, 주 1회 정도는 소장과 재소자와의 대화 및 고충접수를 하고 있다. 직원은 1.5달러의 식비를 내야 하며, 보통 때는 직원용 라운지에서 식사하곤 한다.

담배는 건물 밖에서만 허용된다. 라이터와 성냥은 소지할 수 없고, 건물 바깥 벽에 전기점화장치(electrical lighter)를 부착시켜 거기에 담배를 넣으면 점화될 수 있도록 하여 담배를 계한적으로만 허용하면서 화기 소지에

¹⁰⁾ 한국의 대경찰청에서 실업시구제기금을 활용하여 관찰정보의 컴퓨터화를 위한 타이팅 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듣적이 있다. 재소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켜 그 직업을 활용하여 각종 컴퓨터 분야로 작업과 컴퓨터 훈련을 동시에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축소화 그 기술을 활용하여 유익한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른 위험을 예방하는 방식을 취한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약물남용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질문하니 Drug Abuse Treatment : Participant's Manual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진행을 알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로 살펴볼 수 없어 유감이었다. 마약치료 교육은 1년동안 500시간의 종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여러 반으로 나뉘어 마약전문가와 정신의학자들이 두루 관여한다.

그런대로 미국에서 본 시설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편이라 위안이 되면서, 못내 마음에 걸렸던 애리조나주의 텐트형 구치소에 대한 논평을 부탁했더니, 매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형벌은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과해져야 하는데, 그 경우는 형벌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짐승같이 다루면 절승처럼 난폭해질 것이며, 신뢰를 준 만큼 반응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지론이다.

애리조나의 경우는 극단적인 사례이며, 그에 대해 매우 분개하는 교도관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sheriff가 최근 재소자의 사망사실을 은폐한 일로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통제의 극대화를 한다고 통제가 확보된다고 믿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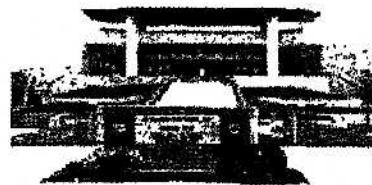
한가지 의아했던 점은 여자교도소에 남자직원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시동 내에서의 활동도 남자직원 다수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 경우 여자 재소자의 여러 면을 보게 되고 성적 접촉의 가능성이 증대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다.¹¹⁾

11) 방문 다음날 우연히 필체본 San Francisco Chronicle 시에는 이 교도소의 한 직원이 지난 몇 년간 몇 명의 재소자의 심적 접촉을 단복하고 또 화장품 등 물품을 재소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된 내용이 실려있었다. 적어도 여자교도소를 운영할 때는 직원과 재소자와의 성적 접촉이나 센프렉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힘을 잃게워준다

(4) 로봇으로 작동하는 첨단자동시설

— 산타 리타 구치소

1999. 2. 18.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앞의 여성교도소 옆에 있는 산타 리타 구치소(Santa Rita Jail)를 방문했다.¹²⁾ 입구에서 길게 늘어선 면회인의 행렬을 보니 첫눈에 대형 구치소임을 실감한다. 여기는 county jail임으로 역시 sheriff의 관할하에 있다.



면회인을 위한 안내판을 보니 모든 면회인들은 예외없이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며, 어떤 소지품의 휴대 도 인정되지 않고, 흡연도 금

지된다. 알콜 마약의 휴대는 당연히 금지되며, 카메라·레코더·지갑·가방 등의 소지도 금지된다. 면회시에 오직 허용되는 소지품은 자동차 키와 신분증만 가능하다. 면회시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며 테이블에서 몸을 기울이거나 일어서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면회인의 짐을 맡기는 로커의 내용물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구치소는 현재 3,700명을 수용하는 대형시설이다. 1983년 건축이 완공되었고, 현재 359명의 교도관에 18개의 거주구역(housing units)를 두고 있다. 모든 경비등급의 범죄자들을 내부에 구역을 갈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송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경비등급에 따라 내부에 8개의 重경비구역, 2개의 중간경비구역, 5개의 軽경비구역(dormitory style), 그리고 2개의 여성용 구역이 있는 테 여성구역은 중/경의 두 단위로 분류 수용한다. 軽

12) 구치소의 sergeant인 Jim Knudsen 씨가 인내롭 담당

경비구역에는 구기를 할 수 있는 체련장, work crew assignments, chapel 등 공간에의 접근이 보장되며, 重경비구역에서는 별도로 분리된 작은 운동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구치소의 가장 큰 특징은 보안과 안전의 편의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를 위해 불필요한 재소자의 이동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식사를 위해 식당에 이동할 때, 그리고 식사할 때 재소자간 잡음과 싸움이 적지 않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구역(unit) 내에 탁자와 의자가 있는 내공간을 만들고, 외공간에는 거실을 두도록 함으로써 재소자의 이동을 최소화한 것이다. 식당에 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식에 가깝다고나 할까.

그리고 가족면회 등 면회시에 별도로 조성된 면회실로 나오게 되면 계호 인력이 따라붙어야 하므로, 사동과 면회실의 거리를 최소화한 것도 특징이다. 면회인들은 건물 2층에 난 복도를 따라가면 자신의 면회실이 나오며, 재소자들은 실내에서 아주 가깝게 접근하여 면회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도관의 계호가 필요없도록 한 것이다.

출정과 이동에 소요되는 계호인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설은 비디오접견실(video interview room) 및 비디오 재판장을 만든 것이다. 미국에서 형사변호인의 절반 이상은 공익변호사(public defender lawyer)로 구성된다. 공익변호사들은 한꺼번에 많은 형사사건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공익변호사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이 사건마다 일일이 구치소로 와서 재소자를 면담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비디오접견실을 설치한 것이다.

재소자나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면 재소자는 그 화상접견실로 와서 앉으면 화상을 통해 변호인과 법적 상담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변호인은 물론 구치소로 직접 와서 상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상담하기 위해 일일이 구치소로 오게 되면 취급할 수 있는 사건수가 매우 적을 것이고, 관련 기관에서는 공익변호사의 숫자를 훨씬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구치소로서도

계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설비라는 현대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비디오 면담은 하루 100명에 달하며, 만족도도 높다고 한다.

또하나는 비디오법정(video court)이 운영된다는 점. 주로 교통사법 등 경미사범들을 위해 활용된다. 법원에서 개정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고 소송활동을 수행하며 그 광경은 비디오로 그대로 중계되고 재소자는 법정에 출두함이 없이 비디오실에 앉아 공판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재소자가 서명해야 할 문서는 팩스로 구치소에 보내어 서명하도록 한다. 유무죄를 답변하는 형사절차(arrignment)의 경우 하루 35건 정도 이 법정을 이용한다고 이 법정은 하루종일 봄빈다고 한다. 비록 비디오 재판이라도 재판인 만큼 치분하고 정숙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판이란 법관과 피고인이 서로 대면한 가운데 해야지 이같은 비디오법정은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느끼지 않는가 질문했더니, 피고인으로서는 법정에 출정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수갑과 포승을 차고 호송버스를 타고 법정에서 대기하다 공판을 하고 또 식사시간 등으로 지체되는 데다, 법원내 구치감에서의 불유쾌한 경험, 그리고 법정에서의 수치심 등을 겪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반긴다고 한다.¹³⁾ 대형시설의 경우 보안과 안전은 재소자의 이동의 최소화만으로 되지 않고, 엄청난 양의 식사 쓰레기처리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3,700명을 수용하는 이 구치소로서는 하루 1만여 식사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를 위한 식품재료의 조달, 스낵류의 공급, 쓰레기 처리에 거대한 인력이 동원되어야 할 판이다. 취사 등의 일은 기계수 중 일부가 뽑혀와 있고 미결수도 일부 참여한다. 거실내의 테이블에서 식사한다고 할 때 식사를 나르는 문제, 식사후 수거해 오는 문제가 거대하고 거기에 인력을 소요하게 되면 계호도 동시에 수반되는 등의 문제는 모든 교도소의 공통된 고민일 것

13) 손합, 법원에의 출정인력의 부담을 헤시 느끼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고할 만하다 나쁜 그런 화상을 놓학 변호인접견, 김찰신문, 공판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문위기를 잘 살피고 인권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피고인신문이 필요적 절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소 법적 장관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비디오 방식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법적 장점이 긴급하고, 당사자의 영사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먼저 추진됨직하다

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기서는 세계 최초로 로봇 시스템(robotics system)을 도입하여 자동운반체계를 갖추었다. 식사, 쓰레기 등 운반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바퀴달린 컨테이너에 넣고, 그것을 지정이동공간에 놓으면 로봇이 그 컨테이너를 밀고 가는 것이다. 현재 30대의 로봇이 작동되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뒤에서 슬슬 밀고 가는 모양도 참 재미있다.

이 로봇은 사람과 달리 24시간 가동되며 거의 부상도 입지 않아 편리하다. 전체 로봇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600만불. 비용면에서 처음 설치 비는 많이 드나, 5년 지나면 본전은 완전히 뺏는다고, 즉 로봇 사용에 따른 교정인력의 절감효과만 따져서 5년 걸리면 설치비용 부담을 충당하며, 거기다 재소자의 노동력 활용(비용+의료비+질병 대비 등)에 따른 부담. 그리고 생길 수 있는 교정사고의 감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훨씬 수익성이 높은 선택이라고 한다. 이 첨단기술을 가미한 시설 때문에 전세계의 교정 종사자들이 참관하기 위해 오고 있다고.

수용시설의 구조는 현대기술과 공간배치의 결묘함으로 역시 최소인력으로 최대의 감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 중앙통제실에는 2명이 한 구역(a housing unit)을 감독한다. 일방통행식 유리로 되어 있어 여러 사동 재소자는 감시실을 볼 수 없고, 감시자는 재소자를 환하게 볼 수 있는 그야 말로 파놉티콘형 일방감시체계(panopticon principle)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또한 사동과 거실의 내부를 상세히 보기 위해 중앙통제실 내부에 다시 비디오감시 시설을 설치해두고 언제 어떤 상황이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층이 재소자 사동인데, 2층의 많은 공간은 면회실로 사용된다. 면회실의 절묘한 배치로 1명의 기술자(technician)가 2개의 구역(housing units)의 면회를 감독할 수 있다. 면회시간은 20분 허용된다. 모든 통화내용을 다 듣기란 불가능하며 무작위로 감청한다고. 여기서는 면회내용은 녹음하지 않는

다고 하는데, 그 많은 수용인원의 면회내용을 녹음하기란 불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증거은폐 등의 우려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¹⁴⁾ 변호인접견의 경우에도 여기서는 유리로 차단된 상태에서 서로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접촉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여기서는 접견감시는 불허하는 대신 접견자 간의 신체적 접촉도 불가능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접촉식 접견(contact visit)은 검사나 변호사가 특히 원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점은 좀 더 알아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 구치소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흡연에 대한 비흡연 재소자들의 반대가 증가하면서 흡연을 금하는 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전체의 추세는 아직 교도소 내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쪽이 다수인 듯하다.

미국교도소가 스웨덴보다 훨씬 엄격처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배우자접견제(conjugal visitation)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허용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섞여 있다. 스웨덴과는 달리 교도소의 어떤 부분도 사진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매스 미디어에만 촬영을 허용한다. 교도소가 보안시설이며 재소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상대적 폐쇄성의 탓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거실(one-single cell)은 별로 없으며(필자가 여태껏 방문한 미국 교도소 중에 one-single room은 없었다), 위험죄수에 대한 관리와 정별의 차원에서 독방이 허용될 뿐이라는 것. 인종에 따른 분화도 확인하다. 교도소 재소자들의 집단 거실을 통제실에서 보니, 백인은 거의 없고 흑인 및 히스패닉이 대부분임을 느낌으로 알겠다. 반면 통제하는 측은 백인이 훨씬 다수. 15세이상 30세 미만 중 1/4의 흑인

14) 우리의 경우 모든 면회를 교도관이 입회하고, 또 모든 서산을 견噎하는데, 그것은 성가드도 적을 뿐더러 교도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나 정체적으로는 입회와 견噎을 모하는지를 선정하여 그들에 대하여는 녹음 및 의무강열을 실시하고, 그물지 않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검열 관찰하는 방식으로 전방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누가 필요적인 검열 관찰대상이고 누가 임마적인 검열 관찰대상인지 재소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교도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통계도 있다고 하니, 교도소란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하층, 인종적 소수, 이데올로기적 반대자를 다스리는 수단이라는 비판법칙학의 견해가 나온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5) 교정의 민영화 — 애리조나의 민영교도소



▲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에 있는 민영교도소 400명의 성인남성을 수용한다. 알코올 및 약물중독과 관련된 범죄자를 치료의무와 함께 수용하는 원화경비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영교도소회사인 Correctional Services Corporation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우리도 지금 민영교도소 설립을 논의하고 있고 관련법까지 제안되었으나 민영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감을 갖고 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래서 애초에 민영교도소 방문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1999. 2. 12. 오전에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소재한 사설교도소를 방문하였다. 정식 명칭은 Arizona State Prison-Phoenix West이며, 교도소회사인 Correctional Services Corporation이 운영하는 여러 교도소 중의 하나이다. 이 교도소는 DUI(drinking under influence), 즉 알코올 및 약물의 영향하에 운전하는 자들을 수용하여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400여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경비등급은 경비수준이다. 소장(J. C. Keeney)은 이전에 교정직에 오래

근무한 후 은퇴했다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설교도소장을 맡았다. 교도소 건물은 창고를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전체 공간이 넓지 않으나 인력절감을 위한 건물 설계는 그린대로 무난한 편이다. 관영 교도소장보다 인상은 부드럽고 답변도 편안했다.

자신의 역할설정을 기업적으로 생각하는지 교정직 인사로 생각하는지 우문을 던졌더니, 교정직이지만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교정문제를 다룬다고 한다.

중경비 교도소도 민영화할 수 있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 중경비시설에 수용되는 자는 소내 질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아서 다루기 어려운 수용자인데, 그 경우는 교정직에 오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혹시 그럴 경우 쉬운 부분은 민간인이, 어려운 부분은 주/국가가 맡아 민간인이 생색내는 결과를 빚어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하여는,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의해 대체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좋은 장비와 경험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정부 등 국가에서 맡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중경비등급 수용자의 경우 공공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탈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인에게 맡기기에 아무래도 안심이 안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민영교도소는 최소한의 경비를 요하는 등급의 것이다. 다루기 어렵지 않으면서 여성적 감각이 필요한 여성교도소, 정신장애 문제를 안고 있는 교도소, 그리고 마야 및 알코올관련 교도소 등이 민영화의 일차 대상이 될 것이다. 사회에 큰 위험을 안겨주지 않으며, 소규모의 숫자로 관리가 가능한 대상이다. 실제로 민영화된 여성교도소로 오클라호마 주에서 350명 수용하고 있으며, 청소년교도소, DUI 교도소 등이 지금 민영화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

민영교도소에서는 어떻게 직원들을 훈련시켜 교정전문인력을 만들어내는가. 교도관들의 교육시설, 즉 Correctional Officer Training Academy에서 받는 정규교육 중 40시간동안을 이들 직원에게도 받게 한다고 한다. 고등

학교 교육 이상을 이수한 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이 교도관학교에 보내 위탁교육을 받게 하며, 수준은 아마 정규 공무원보다는 약간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직원의 보수수준도 공무원보다 약간 낮으며, 직원들의 이직율은 높은 편이나 직원학보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한다. 직원의 교육비는 시간당 8불로 계산하여 학교에 지급한다.

내부 규칙 및 일과표는 주 교도소와 같다. 운영방식은 사적으로 하나, 주 정부는 감독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 하루 4시간 노동, 점호는 하루 3회 실시하며, 외부통근자에 대하여는 1시간에 한번 점호한다.

직원은 56명의 보안직원을 포함하여 모두 90명이 근무한다. 그 중 7명은 주정부 규정에 따라 하루 3교대로 근무하면서 보안감독을 실시한다. 총 재소자는 400명 정도.

교정분야에서 민영화(privatization)란 새로운 개념을 짧깐 토의했다. 민영화는 확실히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과밀수용의 문제에 대한 한 출구를 연 것은 인정된다. 민영화는 또한 교정분야에서 관료제적 업무수행에 따른 번문욕례(red-tape)를 제거할 수 있으며, 기업적 운영은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 필요물건의 구매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직원의 수준은 정부교도소 직원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없으나, 경영능력에 따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교정에 드는 비용으로는 정부교도소의 경우 하루 비용을 46불로 집는 테 반해, 민영 교도소는 37불을 책정한다고 한다. 같은 메뉴, 같은 식사인 경우에도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직원수가 적어 인건비 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빙은 예산을 모두 써야 다음 해 예산삭감을 받지 않음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데 반해, 경영기법을 도입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운영을 보면 주정부로부터 재소자를 넘겨받으면서 1인당 37불의 비용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구매계약의 효율성, 인건비 등을 절감하면 거기서 조금의 이익이 남는다고, 일반기업과 달리 전적으로 이윤동기로 움직이진 않

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민간업체(private corporation)이니만큼 이윤동기를 무시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책임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더니, 자신들의 경우에도 책임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교도소는 음주·약물에 대한 교육·치료 전문시설이므로 교정노동을 중시하지는 않고, 직업훈련 시설도 없다. 외부통근제도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주정부의 청소·미화·조경 등의 작업에 종사한다. 그 노동의 대가는 주정부에서 2/3를 회수하며, 1/3은 재소자에게 돌아가므로 교도소측에서 그 작업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없다고 한다.

알코올과 마약은 매우 끊기 어려우므로 가석방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조치가 계속 수반되어야 한다고, 여기서 가석방되면 6개월 내지 3년간 보호관찰(probation)을 받으며, 알코올치료를 위한自助組織인 AA 프로그램(Alcohol Anonymous)에 등록해야 한다고 이는 마약과 알코올이 지원집단의 도움이 없이는 끊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교정공무원으로부터 반발이 없는가. 실제로 교정공무원조합(Correctional Officer's Union)이란 조직이 있어 민영교도소가 확대되면 자신들의 직업적 안전감을 위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반발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퇴직후 민영교도소로 전직할 수도 있기에 공무원 입장에서 득실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대화를 한 다음 시설을 참관했다. 먼저 면회실 방문. 면회는 공개된 거실에서 탁자에 앉아 대화한다. 테이블은 모두 10개가 비치되어 있어 10명이 한꺼번에 면회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올 수 있으며, 자녀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 몇가지도 비치되어 있다. 직원 1명이 면회실 전체를 감독하며 특이한 행동을 보이면 면회를 중단시킨다. 신체접촉의 범위는 만날 때, 헤어질 때 키스 한번 정도이며, 대화 도중에 진한 애무, 심지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는 제지하고 물품을 건네주는 것도 제지한다.

이같이 경경비시설의 경우 접촉면회(contact visitation)를 원칙으로 하나, 규율 위반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담으로 제한된다. 즉 유리칸막이된 상태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전화기로 대화하는 것이다. 규율위반의 유형으로는 수시로 행해지는 소변검사에서 마약/알코올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가 가장 빈번하며, 그 외 금지 품목의 반입 등이 적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율위반이 찾게 되면 면회 금지도 가능하다. 상습적인 마약, 무기반입 등의 경우 방문객과 면회 금지는 물론 죄악의 제재로는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다.

재소자의 물품구매는 주 1회, 40불 한도내에서 허용된다. 구매신청서에 신청물품을 써서 비치된 함에 넣으면, 그물백에 담아 그에게 교부한다. 가장 인기품목은 담배와 청량음료, 담배는 한번에 10개비가 들어있는 것을 판매하고, 라이터는 소지 가능하나 성냥은 금지한다. 성냥은 화약의 재료가 될 수 있어 라이터보다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의무실(medical unit)을 들러보니 간호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의사 및 치과의사, 심리학자, 정신과의사는 페트타임으로 각각 주 16시간 근무한다. 의무실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각종 금연광고들. 폐가 파고 들어간 광고, 입술 모양이 일그려진 광고 등 아주 흥미롭게 묘사된 것들로 장식되어 있다.

학습실(classroom)에 들어가 보니 컴퓨터 13대, 고교검정고사용 각종 학습지와 비디오가 많이 쌓여 있었다. 문맹자도 적지 않기에 글씨 익히기도 주요 교육의 하나. 여교사가 이 학습을 담당하고 있는데, 재소자의 수업태도가 어떤가 물어보니 모두 훌륭한 학생이라며 자신이 이들로부터 어떤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웃으며 전혀 그런 적은 없다고 한다. 이 직장을 자신은 매우 쾌적하게 느끼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평교사생활을 했지만, 일반 교사로서 가르칠 때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도서관에 들어서니 최근의 신문과 잡지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자유시간에는 언제나 도서관에 올 수 있다고 한다. 계호 없이 돌아 다닐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것이다. 많은 책들로 둘러싸인 공간이 아늑하게 느껴진다.

때마침 점심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식사는 빵 2개, 수프, 옥수수, 쿠키 2개, 당근, 셀러리 등 건강식이었고, 맛을 잠시 본 평가는 담백한 느낌. 식단표를 매주 짜서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었으며, 우유는 하루 2번 정도 제공한다. 조리에는 외부에서 요리사 5인이 관여하며, 재소자들이 자원하여 조리일을 거둔다.

일반식사와 다이어트식 식사가 있으며, 후자는 의사의 처방으로만 가능하다. 외부로 출정나간 사람에게는 점심을 싸서 보낸다. 음식이 차다는 불평이 전체 민원 중 가장 많은 편이다. 식사를 위한 식당이 별도로 있고 거기서 공동식사하는 방식이다.

거실은 학교교실보다 더 크고 농구장보다는 작은 공간을 하나의 대형거실로 설정하고, 거기에 2층 침대를 25개 설치하여 한 방에 50명씩 수용한다. 공동 TV가 여러 대 있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개인 TV를 구입하여 자기 침대 앞에 두고 보는 재소자도 10여명 이상 볼 수 있었다.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은 모두 15개에 이른다. 개인 TV를 시청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방해 안 되게 이어폰을 끼고 볼 수 있도록 한다. 거실 내에 탁자와 의자가 있어 대략 1인 1의자의 비율로 비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질서한 느낌이 들었고 소장이 들어와도 긴장하지 않고 누워서 TV 시청하는 재소자들을 보니 좋게 말하면 민주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질서하고 씨구려 집단합숙소 같은 느낌도 듦다. 민간 교도소장이라 그런지 대하는 태도도 느긋한 편이다. 다만 정부교도소보다는 좀 더 무질서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인 데, 그것이 사실이라 그런지 소장의 운영방침이 그런지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각 거실에 대한 전체적 감시는 50명의 거실 두 개를 한 교도관이 맡고 있다. 거실의 배치를 볼 때 감시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려가 되어 있으나, 아무래도 침대가 몇십개나 큰 공간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은 보기 좋지는 않으며 프라이버시 보호도 전혀 되지 않은 문제를 노출한다.

옷은 주황색 상의와 블루진을 입고 있으며, 사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발은 작업화, 슬리퍼, 운동화가 있었는데, 부츠라 불리는 목이 긴 작업화는 지

급하며 슬리퍼 및 운동화는 자변한다.

전화기는 비치되어 있으며 하루 2번 전화가 가능하다. 전화비용은 수신자 부담(collect call)의 경우만 허용된다. 모든 전화는 감청한다고 한다.

화장실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었으며, 샤워기는 모두 7개로 5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변좌는 3개가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듯.

거실 밖에는 운동장이 있다.

중앙통제실에는 모든 재소자의 사진과 이름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여기서 침대 위치도 결정해 주고 인원을 체크한다.

이 교도소에서는 폭행사례는 거의 없고 마약관련 문제로 가끔 징벌방에 구류당하는 경우가 가장 심각한 유형의 규정 위반이다.

직원 중 남녀비율을 물었더니 우선 보안관련 직원의 경우 35%가 여성이며, 카운셀러·기록작업·컴퓨터작업·행정요원 등의 경우는 여성이 60%를 차지한다. 기본적으로 남녀 직원간의 차이는 없으며 직원선발 시에도 남자 여자 구분을 의식하지 않고 뽑는다고. 여성직원의 유일한 불편은 재소자의 옷을 벗길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소변검사의 샘플을 채취하지 못하는 정도라고 한다.

국가교도소와 민영교도소 간에 처우상의 차이가 있는가 질문에 대하여, 자신들도 기본적으로 주의 법률을 따르므로 그 점에서 재량권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각종 시설, 작업 프로그램도 주정부와 유사하다. 주 교도소 및 이곳 민영의 경비시설은 dormitory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도 유사하다. 재소자들은 주 교도소보다 이곳을 더 폐쇄하게 느낄 것이라고 하기에, 비교평가 자료가 있는가 물었더니 그런 것은 아직 없으나, 이곳에 올 때의 느낌이 그렇다고 확신한다고. 그렇다면 비슷한데도 장점으로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의 질문에, 우선 분위기가 아닐까 응답한다. 보다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고, 직원과 재소자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민영교도소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절감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과밀수

용으로 고민하는 미국의 교정환경 하에서 조세저항 없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실용적인 이유도 매우 중요하다고 토로한다. 범죄에 대해 엄격한 형사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수용인구의 증가가 불가피하며, 그렇다면 민영교도소는 가까운 장래에 팽창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체적인 인상으로 민영교도소는 덜 관료적이고 직원들도 더 친밀하게 대하여, 사무실 배치나 시설운용도 엄격한 교도소보다는 민간기업체나 민간공장을 어느 정도 닮은 느낌이 있다. 민영교도소 한 곳을 방문하고 결론을 내리기엔 성급하지만, 단일한 교정체제가 아닌 어느 정도의 경쟁적 분위기가 도입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물론 새로운 시도는 완화된 처우가 가능한 집단으로부터 가능할 것이며, 경미범죄자 음주운전자 마약사용자 여성재소자 등에게 보다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미국교정의 딜레마 — 정책적 쟁점

미국의 교정시설과 운영의 실제를 돌아보면서, 또 이론가와 실무가, 그리고 교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들과 토론하면서 생생함과 구체성을 얻을 수 있었다. 보다 본격적인 분석은 다음을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몇 가지만 지적하기로 한다.

①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사회복귀 이념이 도전받으면서 전통적인 응보관념이 정책지표로 대두하게 된다. 1970년대 후정치와 사법을 지배한 보수주의적 풍토는 형사정책에서도 강경정책(Get Tough Policy)이 지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한 선호는 미국경제의 퇴조와 베트남 전쟁 패배후의 자부심의 손상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것이었다. 형벌에 있어서는 70년대 초반 사형의 부분위원회 결정으로 결정에 달했던 리버럴한 경향이 70년대 후반들어 약화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재개된 사형집행은 최근으로 올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재소자의 평균형기도 대폭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80년 이후 레이건-부시의 공화당 정권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하면서 복지예산의 사감 등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에 타격을 가했다. 사정은 1992년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도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범죄증가에 대해 경찰관 수를 늘리고,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사회로부터 범죄자를 배제시키는 테 주안점을 둔 정책이 지속된 것이다. 1990년대 후반들어 그래도 범죄의 증가 일변도의 추세가 약간 격인 것은 강경정책이 지속된 결과가 아니라 미국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비율이 감소되며,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등의 호경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범죄투쟁이 강조되며, 처벌의 강화가 능사인 듯한 분위기는 정책현실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활황화와 함께 리버럴한 형사정책의 주장이 기세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도 감지된다.

유권자의 표를 얻고 살아가는 것은 미국의 정치인 뿐 아니라 사법, 경찰도 마찬가지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범죄공포를 느끼는 일반 대중들에게 서부영화에 나오는 보안관식의 이미지가 더 어필할 수 있다. 범죄문제에 대한 장기적 접근과 차분한 설득보다는, 범죄자를 사회의 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여야 한다는 해결책이 정서적으로 쉽게 파고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법은 범죄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범죄의 재생산구조를 더욱 강화시킬 때다. 이러한 미국의 추세는 인권가치가 길수록 영향을 미치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길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② 넓은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정의 현실에서 과밀수용의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남은 이러한 강경정책, 구금위주 형사정책의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그 중에서 구치시설의 열악한 수준이 가장 눈에 띄인 현상이었다. 위에서 소개된 것 이외에도 필자는 몇몇 구치시설을 참관할 수 있었으며, 법정에서 재판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을 스쳐 지나갔다. 그런 구치시설의 열악성은 심각하게 느껴졌다. 특히 *sheriff*의 관장하에 있는 지방구치소의 경우 시설이 임의적이고 매우 열악한 시설들이 적지 않았다. 사회의 하층을 쓸어담아놓은 임시창고라고나 할까.

미국의 교정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과 다른 점은 대인계호 중심을 벗어나는 추세이다. 선진국일수록 인건비가 비쌀 것이며, 때문에 대인계호는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그보다는 보안성이 높은 건축설계에다 자동화된 운영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대인접촉에 따른 분쟁의 소지도 줄이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감시하는 교도관 두어명이 한눈에 100명 이상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소자의 거실을 배치하고 일방통행식 유리를 통해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재소자의 공간이동에 따르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탁자를 아래 실내에 고정시켜 놓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 인원을 한 곳에 몰아넣은 결과 재소자들이 다른 재소자의 폭력 앞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최소한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도 받기 어렵게 된다. 감시하는 측과 감시당하는 측 사이에 인종과 계층이 위낙 다르므로 서로간에 대화가능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듯하다. 그래도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인간적 교감 속의 행정을 중시하는 우리의 풍토와 사물을 관리하는 듯한 미국의 풍토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보안기능을 목적 시설과 장치에 대폭 의존하게 된다면, 교도관의 주된 역할을 보안으로부터 교화기능의 수행으로 원활하게 이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미국의 경우 민영교도소의 출현은 강경정책에 따른 과밀수용화의 문제를, 유권자의 조세증대 부담을 피하면서, 해결하고자 한 정책적 우회로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한국에서도 법무부에서 민영교도소의 확장을 받아들인 근처에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당면한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고가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관료화되고 타성에 젖은 국가중심의 행정에 충격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민영화의 장점은 일정부분 인정된다. 필자가 방문한 민영교도소의 직원들과 교도소 자체의 분위기는 국영교도소와 매우 달랐다. 보다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재소자와 직원 사이의 접촉이 원만했으며, 재소자에게도 보다 활기가 있음이 느껴졌다. 딱딱한 폐쇄형 위주의 운영으로부터 서비스 마인드 혹은 경영 마인드가 어느 정도 스며들 필요가 있

음이 느껴졌다. 민영교도소의 장점은 기존의 국영교정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 가령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분야,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치가 있는 분야, 종교적 인도가 필요한 분야 등에 보다 잘 발휘될 것이다. 대신 통제가 곤란한 집단, 업종경비를 필요로 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민영교도소가 들어설 틈이 아직은 제한될 것이다. 다만 민영교도소가 기존 교정을 대체하는 정도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의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를 떨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민영교정의 장점이 효율성에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인도주의 행정의 요구에 균형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할 일이다.

④ 교정행정에 법치주의의 요구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일 것이다. 필자는 워싱턴 시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단체인 미국민권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법률분과를 방문하고 이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거기에는 여러 전문 프로젝트 중에서 전국교도소 프로젝트(National Prison Project)를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여러 변호사들이 재소자를 위한 대규모의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이 제기한 주된 이슈는 과밀수용 문제, 교도소 내의 폭력, 의료수준, 환경문제, 화재예방조치의 안전성, 재소자 분류 등을 광라하고 있었다. 필자가 면담한 Bronstein 변호사는 자신의 경우 1984년부터 하와이 주 교도소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그 개선을 위해 임법자 및 교정당국과 대화와 설득을 한다고 했다. 시설내 구금과 사회내 처우를 비교하여, 단순히 구금한다고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일깨우려는 것이다. 범죄의 부담, 수감으로 인한 부담 모두 궁극적으로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끓이다. 어떤 정책방향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고 보다 안전하며 보다 인도적인지 지역주민과 토의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특별한 처우가 미국법의 보편적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특별한 피해가 있는지 찾아내어 이를 공익소송적 견지에서 대규모의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미국민권연합의 일상적인 일이다. 공익의 확보는 대중에 대한 캠페인과 의회에의 로비, 그리고 법원에의 공익소송 등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위해 모든 영향력 있는 관련자와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교정문제에의 법률가의 참여는 우리의 경우 최근에야 시작되었고 그 참여내용도 개별 사건에 개입함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정문제 전체가 법치주의의 기준으로 재구성될 날도 곧 다가올 것임을 절감하면서, 당국에서는 법치의 기준이 행정의 기준에 뒷지 않게 중요한 것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범죄문제는 효과적인 교정활동에 의해 억제되어 진다고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교도소가 더욱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교도소의 존재가 계급과 인종의 넘을 수 없는 구분선을 확인하고 창조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사회에 문제있는 부분을 통합하고 포용하려 들지 않고, 교도소라는 주변화된 공간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기본적 사회정책으로 바람직할 수 없다. 다만 교정의 내용이 시민과 전문가, 언론의 상시감시 속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 교정의 타락과 교정비리는 보다 억제될 것이다. 이론가와 법률가들의 활발한 참여는 유권자·선출직 공무원 사이의 잘못된 이익담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인권중심의 처방은 유럽 국가에서 제도화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그 점에서 인권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함을 시설참관을 통해 확인한다. 그것은 미국사회의 특성의 반영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어느 곳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는 막연한 자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실을 정당화하려는 발상은 다양한 법적 관찰과 다양한 실험이 행해지는 미국법제의 특성을 무시한 것인데, 미국이 모든 면에서 선진국일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 앞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나 행정의 문제는 결국 범죄자를 어떻게 우리의 이웃으로 끌어들일까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용과 포용 그리고 인권의 관점은 교정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기본자침이 되어야 함을 미국의 실패와 성공에서 역설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스웨덴의 교정정책과 행형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韓 實 塏**

I. 교정선진국으로서의 스웨덴

형사정책을 전공하는 학도에게 스웨덴은 무엇보다 「교정선진국」으로 불린다. 스웨덴의 복지주의는 실업자, 잠애자, 아동, 노인은 물론 교도소의 재소자에게도 미친다. 스웨덴 교정을 이끄는 두 원칙은 ▲자유형은 자유박탈에 족하고 더 이상의 고통을 파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교정환경은 가능한 외부사회와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와의 접촉은 가능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에 따라 재소자들은 작업에 대한 임금을 받고, 동료재소자와 그룹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으며, 쉬는 시간에는 카드게임도 즐긴다. 커피나 차를 자유로이 마시고, 담배도 사 피울 수 있다.

교도관들은 재소자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사회내 전문가와 연결한다. 가족면회는 교도관의 감독없이 이루어진다. 전화도 대체로 허용된다. 정기적인 휴가가 인정되는 교도소도 많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충실히 이러한 제도를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인 운영원리로 삼았다는 것이 두드러진다.

교정시설의 낙후성과 재소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빈번한 교정부조리, 반정역살 이를 한다고 자조하는 교도관들의 현실을 늘상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 교정은 그야말로 딴 세계의 이야기로 들린다. 필자는 1997년 1월 20일부터 2주간 스웨덴 연구원(Swedish Institute)의 알선으로 스웨덴의 교정현실을 방문조사할 기회를 가졌다. 목표는 스웨덴의 형벌 및 행형 전반을 개관하면서, 구체적으로 교정시설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했다. 필자는 이미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의 형사정책 전반을 이론적으로 개관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기초연구에 의지하여¹⁾ 이번에는 교정정책

에 대한 전반을 학자, 정책당국, 실무가와 직접 면접조사를 하여 살아있는 정책내용을 확인하면서, 교도소의 운영과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또한 필자는 스웨덴 방문에 이어 핀란드 헬싱키의 대표적인 두 연구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핀란드의 입장과 스웨덴의 입장 비교해보기 위한 문헌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도 본문에 반영될 것이다.

필자가 방문한 스웨덴의 교정시설은 2개의 개방교도소(Asptuna, Tillberga), 1개의 중경비폐쇄교도소(Kumla), 그리고 1개의 구치소(Huddinge)이다. 후당에 구치소와 아스프루나 교도소는 스튜홀름 외곽에, 나머지 두개는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 이들 시설을 살펴보면서 교정선진국에서는 범죄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탐색해보았다.

현지조사는 그 협장의 실감과 살아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점에서 자료연구와 다르다. 처음에 교정시설 중심의 계획은, 스웨덴 연구소의 실무자와 논의하면서, 필자는 최근 스웨덴에서 형사정책상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접근을 아울러 요구하였다. 또한 사회내 처우의 중심을 이루는 보호관찰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문제를 아울러 확인코자 했다. 최근 스웨덴에서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운용을 들러싼 현장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점도 소개하고자 했다. 단지 복지국가로만 생각하던 스웨덴의 경우에도 범죄문제를 둘러싼 복지적 접근과 억압적 접근이 계속 대립하여 왔으며 이러한 논쟁은 전체 형사정책의 골간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도 도입적 설명을 하고자 했다. 이리하여 내용은 전체 형사정책의 기조, 최근의 주요한 형벌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교도소방문 기록을 세밀하게 기술하는 형태로 되었다. 다만 논의의 완성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으므로, 여기 서술하는 현상들은 1997년 2월 현재의 것이며, 논의자료는 추후 보충되어진 것도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 이 글은 1996년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해외지역연구과제(학술진흥재단)로 수행한 연구임.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助教授

1) 한인섭, "북구의 형사정책 연구—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지역연구, 제3권 제2호, 1994 여름호, 205~258쪽; 한인섭, "스웨덴의 교정처우와 민간참

여", 각국의 자원봉사제도 연구, 법무부, 1994, 165~214쪽. 그리고 필자의 글에 소개된 논문 이외에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Karen Leander, "The Normalization of Swedish Prisons", Vincenzo Ruggiero, Mick Ryan & Joe Sim, *Western European Penal Systems, A Critical Anatomy*, London: Sage, 1995, pp.169-193; Bo Svensson, *Criminal Justice Systems in Sweden*,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1995;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Hugo Tiberg et al., *Swedish Law, a survey*, Stockholm: Juristförlaget, 1994 등.

II. 형사정책의 기조 및 형벌상의 동향

(1) 형사정책의 기조

스웨덴은 교정선진국, 인도주의적 형사정책으로 정평을 얻고 있다. 이는 다른 북구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공통된 현상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가장 판대한 편이며 스웨덴은 그 중간쯤 해당되고 편란드가 약간 억압적인 형사정책을 갖고 있는 편이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구금자 수에서도 확인되고, 시설환경 및 형법정책의 기조에서도 드러난다.²⁾

정책기조는 상대적으로 보다 복지지향적 접근(welfare-oriented approach)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억압적 접근(repressive approach)도 있을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복지에 주안점을 둔 판대한 접근방법이 우세했다. 이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형벌범위가 감소하고 비범죄화의 추세가 지속되었다. 정치적 시위, 국가모독 등이 비범죄화되었다. 포르노그래피, 낙태 등도 비범죄화되었다. 형벌에서는 모두 형벌의 종류 및 이용을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군교도소의 폐지, 평시는 물론 전시하에서의 사형도 폐지, 상습범을 대상으로 한 특수시설 수용 등이 폐지되었다. 평균형기도 단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러한 판대한 형벌정책은 후퇴되었고 형사입법의 팽창 현상이 생겨났다. 물론 팽창현상이라 해서 무조건 억압적 정책으로 회귀한 것으로 단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팽창의 한 단면은 성폭력 관련규정이 뚜렷하게 된 점이다.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포르노그래피, 비디오섹스/폭력, 아내구타 등이 새로이 처벌되었다. 이같이 섹스/젠더 관련 범죄가 구체화되고 추가된 것은 여성운동의 성과의 반영일 것이다. 그리고 포르노그래피 등을 다시 제한하게 된 것은 보다 보수적·억압적 지향점으로 선호하는 측면과 여성운동의 성과가 일정하게 교차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마약범죄, 경제범죄,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 및 구성요건의 확장 등이 변화의 핵심적 내용이다.³⁾

이러한 정책의 변화의 배경에는 정치적 역학의 변화가 개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는 사회민주당의 권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이다. 사회민주당은 범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구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패배자(a loser)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접근은 연대감, 사회공학 및 사회

2) 이 기조는 스톡홀름 대학 범죄학연구소 소장 Henrik Tham 교수와의 대담(1997. 1. 21), 그리고 편란드 헬싱키의 HEUNI 소장 Matti Joutsens와의 대담(1997. 2. 3.) 및 입수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

3) Henrik Tham, 'From Treatment to Just Deserts in a Changing Welfare State', A. Snare (ed.), *Beware of Punishment, Scandinavian Studies in Criminology*, vol. 14, Oslo: Pax Forlag, 1995, p. 97.

적 치료(solidarity, social engineering and treatment)와 관련된 정책을 선호한다. 이를 범죄에 대한 복지적 관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적 접근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통제의 그물망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형벌 및 형벌의 남용 대신 치료와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형벌 및 범죄규정의 감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⁴⁾ 특히 마약정책에서 복지적 지향은 억압적 지향과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또한 범죄원인을 빙관, 사회해체 등으로 설정하게 되면 형벌적 대책보다는 보다 일반적 사회정책의 틀 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범죄자는 이웃시민이라는 동정적 관점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범죄자에 대한 비억압적, 국가적 간섭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면서, 범죄자를 환경의 피해자로 보는 관점이 도전받게 된다. 자유주의적 모델에서는 범죄자를 (시민의 권리와 자유, 재산 등을 침해하는) 악탈자 내지 기생충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범죄자는 절망적인, 이해할만한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정당화되기 어려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따라서 범죄자는 그가 저지른 잘못만큼 용분의 대가를 받아야 하며, 피해자나 패배자처럼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선 안된다. 그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행위자이다. 여기서는 자유, 책임, 개인이라는 요소가 강조된다. 1980년대 이후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이전처럼 압도적으로 강한 정당은 아니며, 정권을 내주기도 했다. 때문에 부르조아-자유주의 정당들이 가장 잘 내세우는 대범죄투쟁의 구호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80년대 이후 형사정책의 기조가 보다 억압적·보수적이며, 형벌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치적 배경을 이룬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법적으로 볼 때 스웨덴의 형사정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볼 때 훨씬 복지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1980년대 이후의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의 악화가 교정처우의 악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정책적 방침은 뚜렷하다. 경제여건의 악화가 곧 교정처우의 악화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국가(미국) 등과의 차별성은 뚜렷한 것이다. 아마도 스웨덴은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선진복지주의적 접근이 남아있는 것이다. 더욱이 1970년대에 정착된 복지국가적 교정모델에 기초한 교도소 환경 등은 거의 손상없이 남아있다. 북구에서 억압적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았다고 하는 편란드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 행형정책의 면에서 스웨덴, 노르웨이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현저하다.⁵⁾ 요컨대 복지국가적 형사정책 모델이 큰

4) Tham, 앞의 글, p. 114.

5) 편란드의 경우 지난 20년간 형벌수준이 현저히 감소한 드문 예를 기록하고 있다. 70년대까지 인구 10만명당 재소자 인구 120명을 기록했던 편란드는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률에서는 유지되면서, 보다 자유주의적 공격을 수용하여 악간의 억압적 모델로의 후퇴가 보여지는 것이다.

(2) 형벌의 종류와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제도의 이용

1) 자유형과 그 대안 :

스웨덴에서 형사제재는 크게 자유형(14일에서 무기형까지), 벌금형, 조건부 자유형(conditional sentence), 그리고 보호관찰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 자유형과 벌금형이 가장 일반적인 형이며, 조건부 자유형 및 보호관찰 등이 그에 대한 변형적인 형태인 셈이다. 조건부 자유형은 2년간의 조건부로 형을 유예하는 형을 말하며, 유예기간동안 새로운 범죄를 행했다면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보호관찰(probation)은 범죄자를 사회 내에서 상담, 지도, 관찰함을 말한다. 1988년 이후 알콜 및 약물남용자에 대해서 법원은 자유형을 과하지 않는 대신 특별한 형태의 보호관찰을 당사자의 동의 하에 선고할 수 있다. 즉 범죄자에게 알콜 및 약물남용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고 그가 그 조건을 충족하면 자유형을 면하는 대신 치료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다. 이를 계약처우제(contract treatment)라 부른다. 알콜남용자·약물남용자가 범죄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해도 일종의 피해자없는 범죄에 해당하며, 달리 보면 알콜이나 약물남용으로 인한 중독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치료프로그램을 받기로 진지하게 약속한다면 형벌 대신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계약상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유예된 자유형을 복역해야 할 것이다.

1990년부터 청소년(18~25세)에 대한 사회봉사제(community service)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10월 이하의 자유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행되고 있으며, 자원봉사기관에서 40시간 내지 200시간동안 무보수로 공의작업을 과하는 것이다.⁶⁾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핀란드의 인구 10만명당 재소자수는 75명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에 반해 다른 북구에서는 원래 60여명 정도, 네덜란드는 40여명 정도였는데 형벌정도가 약간 상승세를 보여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북구 세계이 대차없는 상태를 이루고 있다. 왜 핀란드에서만 이러한 자유형의 현저한 감소가 가능했던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도출될 것이다. 그에 대해 핀란드의 국립법정책연구소(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Legal Policy)의 Seppäläe 소장은 대답(1997.2.4)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치체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실제가 달라졌다. 음주운전자에게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던 경향으로부터 조건부 자유형으로, 그리고 형기도 감경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에서 사후통제보다 예방적 통제(routine check)에 초점을 맞추어 운주운전자 자체가 줄어들게 만들었다. 둘째, 가석방(parole)이 매우 증가했다. 세째,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Tapio Lappi-Seppäläe, "Penal Policy and Sentencing Theory in Finland", *The Canadian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vol.V. No.1, January 1992 참조.

6) Ekbom, Thomas (1995), "Crime and Correctional System Situation in Sweden", A

스웨덴에서 자유형에 대한 일차적 대안은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probation) 및 보호관찰부 가석방(parole)이다. 이는 스웨덴 교정보호국(Swedish Prison & Probation Service)에 의해 교정과 함께 통일적으로 관리된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전 조사보고서(presentence report)를 만들 책임을 진다. 이 보고서는 법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사설내 처우가 아닌 사회내 제재(community sanction)의 활용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장기간 수감된 자의 대부분은 가석방 후 1년동안 보호관찰 서비스(probation service)를 받게 된다.

보호관찰의 주요한 목표는 사회내 처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활용에 있다. 때문에 보호관찰 서비스는 전문가 공무원과 시민관찰관(lay supervisor)가 긴밀히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며, 보호관찰대상자는 이들들과 모두 관련을 갖는다. 보호관찰관은 고도로 훈련받고 일에 대한 수행의지를 갖도록 요청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복지 전공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심리학 상담학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요청된다. 이들은 자신의 고객을 상담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며 격려한다. 보호관찰관의 주요한 일은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보고서의 작성으로 재판을 듣는 일, 보호관찰 실무에서 고객의 접촉인사(contact person)로서 지도원호하는 일, 그리고 사회내 처우의 전반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것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직접 전문화된 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조직체계를 만들고자 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시민관찰관은 전문공무원과 함께 고객의 발전상황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은 보호관찰 서비스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한 고객의 접촉인사로 지명된 시민관찰관은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보호관찰 서비스의 눈과 귀가 되면서 고객의 모든 면에 걸쳐 상담, 지원활동을 통해 고객들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전문가와 보통시민들이 합쳐서 범죄예방 및 범죄자처우를 위한 시민협력, 시민참여의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스웨덴 제도의 장점이라 주장할 때 그것은 단순히 미사여구로만 들리지는 않았다.⁷⁾

자유형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은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및 계약처우제(contract treatment)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시간 지역사회 내에서 무불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주로 18세 내지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사회봉사명령이 아니었다면 단기자유형을 복역할 자에게 적용된다. 이

lecture in Tokyo.

7)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in Sweden*, "Probation work in Sweden", June 1996. 위의 Ekbom의 자료를 보면 1992년 현재 5,000명의 시민관찰관들이 월 26불 만큼의 대가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는 특별한 종류의 보호관찰인 셈이다.

한편 또 다른 특별한 보호관찰 형태로서 계약처우제가 1988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는 마약 및 알콜 중독자로 범죄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전제로 자유형 대신 사회내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 제재의 확정에 앞서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동의를 준수하는지는 엄격하게 감독한다. 이 제재는 2년 이내의 자유형에 대한 대안으로 구상된 것이다.⁸⁾

2) 전자감시제도의 실험과 제도화

최근 스웨덴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제재는 전자감시를 통한 집중감독제도(intensive supervis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의 실험이다. 이 제도는 8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⁹⁾, 89년 경부터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중이다.¹⁰⁾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다 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1994년 실험적으로 일부에서 도입되었고, 계속 확대실시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스웨덴의 제도는 3월 이하의 단기자유형에 대한 선택적 대안으로 도입되었던 점이 이들 나라와 다른 특색을 보여준다. 필자가 대담한 학자와 실무가들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있을 만큼, 이 제도의 성과와 성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때문에 필자는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제도화 과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자감시제도가 실시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스웨덴 범죄방지연구원(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을 방문하여 그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¹¹⁾

스웨덴에서 전자감시제도는 3개월 이하의 자유형을 살기로 선고받은 자 중에서 자유형 대신 전자감시를 받기로 동의한 자 중에서 선정된다. 그는 주간에는 그의 생활을 위해 직장에서 근무하고 직장 일을 마치고 시장을 보는 등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정귀가시간부터 지정출근시간까지는 자신의 집을 떠나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야간에는 스스로를 가택연금시키는 셈이다. 가정에 머무를 때도 교도소와 같은

8) 한인섭, 복구의 형사정책연구—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30쪽. 1993의 경우 계약처우제는 658명이 선고받았으며, 그 중 11%가 여성이었다.

9) 미국의 전자감시에 대한 한국 문헌으로는 정갑섭, “미국의 전자감시 시스템과 가택구금의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3호, 1993, 85~112쪽; 김용준, “미국의 출소자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호, 275~292쪽 참조.

10) 법무부 보호국 EMP연구반, “사회내 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보호, 법부부, 1999/6, 101~164쪽 참조.

11) 1997.1.23. 필자는 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주로 안 앤더슨 연구원(Jan Anderson)과 만나서 토의하였다.

조건 하에서 며칠에 되므로 알콜 및 마약 등을 금지된다.

전자감시제도는 3개월 이하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는 집중감독 및 감독내용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범죄자와 한 가정에서 동거하는 자의 동의도 필수적이다. 신청이 있을 경우 실시여부는 지역의 보호관찰 사무소에서 결정한다.¹²⁾ 소요비용은 사전에 지불해야 하고 영수증을 보호관찰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감시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 전제로서 전기 및 전화가 가능되는 적당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범죄자는 주야간 모두 가택연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간에 노동, 공부 기타 전념할 작업이 있어야 한다. 노동 이외의 직종에 있더라도 적어도 반일제 근무 이상의 작업에 종사해야 한다. 범죄자는 보호관찰 서비스에서 결정된 대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알콜, 약물 기타 모든 마약 종류는 금지된다. 범죄자는 집중감시기간동안 하루 50크라운(6천원 정도)을 지불해야 한다.

소요장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쪽 빌목에 채우는 전자족쇄이며 이를 transmitter라 부른다. 이는 언제 어느 경우든 말에서 떨 수 없다. 제품은 이스라엘 제로 성능은 여러 차례 실험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함이 입증되었다고 했다. 필자의 느낌으로 족쇄의 크기는 어느 정도 감추어질 만하나, 조금 기술이 향상되면 훨씬 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둘째, 전화기 및 전기선에 연결된 감응기로 이를 receiver라 부른다. 족쇄로부터 감응기로 분당 몇차례의 신호가 보내진다. 그 신호는 기록되어 호스트 컴퓨터로 전달된다. 감응기와 족쇄가 근거리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15미터 이상 떨어지면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즉각 감응기와 연결된 컴퓨터에 신호를 보낸다. 그 컴퓨터는 Norkoepping 시에 있는 중앙 통제실에서 관리되며, 다시 컴퓨터 단말기로 거주지역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달되며, 담당 관찰관은 대상자에게 확인전화를 하게 된다. 그가 그러한 제한조건을 위반하면 수감되어 원래의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이 전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비용은 상당하지만, 일상비용은 매우 저렴한 편이다. 재소자의 경우 1인당 하루 1,000크로나 정도 드나, 전자감시제도를 이용할 경우 450크로나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그 비용의 대부분은 대상자 자신이 부담하므로 형집행에 대한 국가부담은 크게 절감되는 셈이다.

집중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통상적인 경우 적어도 주 2회 가정방문이 이루어진며, 그들 중 일부는 야간 및 주말에 이루어진다. 전화를 통한

12) Lis Somander, *A Year of Intensive Supervis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 results for the period August 1994-July 1995*, The National Prison and Probation Administration, p. 4.

접촉을 유지할 수도 있다.¹³⁾ 마약, 알콜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혈액·소변·breathalyser 샘플을 채취해 보내기도 한다.¹⁴⁾

그리면 실제 이용도는 어떤가. 1994년부터 기술적 여건상의 제약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범설시가 이루어지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4. 8~1995. 7 : (3개월 이하의) 단기자유형 대상자수 637명 중 432명(69%)가 신청, 이 중 396명에 대해 허가가 내려짐. 실시자 중 93%가 성공적으로 완수, 6%는 조건 위반으로 취소. 위반사유는 알콜 혹은 마약의 이용, 정해진 시간에 집 혹은 직장에 있지 않음.

1995. 8.~1996. 2. : 단기자유형 대상자 수는 451명으로 음주운전이 과반수, 나머지는 폭력 및 절도 등. 이 중 341명(77%)가 신청. 이 중 309명(89%)에게 허가가 내려짐. 실시자 중 91%가 성공적으로 완수, 6%는 조건 위반으로 취소. 대체적인 수치는 시행 첫해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짐.¹⁵⁾

이러한 수치로 볼 때 다수의 단기수형자들이 전자감시제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성공적이며 입증되었다고 자평할 수 있을 법하다. 전자감시제도의 옹호자들은 수감시설에서 과잉구금 현상을 경감시킬 수 있고, 범죄자의 사회내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며, 범죄자와 가족·사회와의 결합을 유지시킬 수 있

13)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관찰의 한 특수한 형태로 집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원호, 감독을 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전자감시제도를 실행하는 현장에 동행할 수 있었다.

97. 1. 28. 오전에는 보호관찰 센터에 가서 세실리아 앤더슨(Cecilia Anderson)으로부터 전자감시에 대한 실무 강의를 들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대상자(client)가 있으니 한번 보자고 해서 동행했다. 그녀의 오늘의 대상자는 보호관찰관 사무실로 방문한 키르고 잘 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약간 어리둥절하고 불안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보호관찰관이 대주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운행에 든년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 돈은 전자감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비로 부담한 것이다. 조건에 따라 해야 할 소변검사에 동의했으므로(이 소변검사는 마약 및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그는 주 1회 사무실에 와야 하고, 사무실에서 2~3시간 정도의 강의 및 면담을 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귀가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늦었을 때는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는 2인의 보호관찰관이 동행하며, 저녁에 예고없이 몇차례 방문하기도 한다고 했다. 직장에는 그의 상사 중에서 시민감독관이 선정되어 그는 보호관찰관에게 소정의 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이 실시된다. 그 시민감독관도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사무실에서 전자족쇄를 채우고 감옹기를 들고 그 청년의 집으로 갔다. 집에 가서 전화와 연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설치 후 집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신호음이 잘 연결되는지 확인했다. 대상자는 약간 긴장된 얼굴로 보호관찰관이 하는 일을 쳐다보면서 보호관찰관이 하는 지적을 주의깊게 듣고 있었다.

14) 앞의 글, 5쪽.

15) Lis Somander. *The Second Year of Intensive Supervis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 results for the period 1 August 1995-29 February 1996, Swedish Prison and Probation Administration* 참조.

는 잇점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형사재판의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갖고 있으며, 보호관찰 중 지도·원호 기능보다 감시·감독기능에 더 치중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거기다 빙곤자는 혜택을 보기 어렵고,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비판한다.¹⁶⁾

그러나 스웨덴의 예는 보다 성공적이다. 적어도 직업활동을 유지하게 하고 수입상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잇점, 가족과의 유대 및 자녀와의 직접적 접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잇점, 시설내 구금보다 인도적이라는 잇점, 비용 면에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크다는 점은 쉽사리 인정될 수 있다. 시행의 실제를 평가해 보면 재범율을 시설내 구금의 경우보다 감소시켰다는 점도 인정된다. 또 하나의 부수적 효과는 단기수형자들이 주로 알콜/마약습관이 있는 자의 비율이 적지 않기에 범죄행동 뿐 아니라 마약/알콜 습관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성과를 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¹⁷⁾

실제로 전자감시 제도는 범죄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유형에 비하면 너무 경미한 고통만 초래하지 않을까. 앞의 앤더슨 연구원에 따르면, 이 제도에 대한 수형자의 태도조사의 결과 매우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매우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럽다(hard, tough, painful)하다는 것이다. 자유사회에 살면서 부자유를 실감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가운데 자의의 훈련을 쌓고 범죄의 대가를 충분히 실감하고, 또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치르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잇점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한가지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전체 수형자의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종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새로운 사회내 처우들이 자유형과 같은 시설내 처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효과를 넘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영향력을 더 넓히고 형사적 통제의 대상자들을 더 확대하는 효과를 자아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형사적 그물망의 확대효과(net-widening effect)라 한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 영국은 1989년 정도에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보호관찰의 한 유형으로 채택했기에 그물망 확대효과를 피할 수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웨덴의 경우 이 비판을 감안하여, 전자감시제도는 자유형이 확정된 자들 가운데, 그 집행방법의 하나로 이 제도를 채택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물망 확대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경우 비판을 감안한 대안을 세운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적인 그물망 확대효과마저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

16) 森下忠, 刑事政策の爭點, 東京:成文堂, 115-117쪽 참조.

17) Lis Somander, 앞의 글(1996), 19~20쪽.

는 생각이다. 교도소에 들어온 만한 범죄자군은 어느 사회나 넘쳐나기 마련이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교도소의 과밀화 가능성은 현실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그런데 전자감시제도는 교도소의 일부 기능을 대행하게 되므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수만큼의 신규인원을 입소시킬 여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관련되는 또 하나의 비판은 개인에게 전자족쇄를 채우는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Big Brother의 사회가 현실화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이다. 문제의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즉각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기술적 가능성은 이제 활짝 열려 있다. 이러한 개개인에 대한 전자관리·감시 시스템을 손쉽게 용인하면 나중에는 모든 개개인에게 바코드를 붙이고, 일거수 일투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이다. 단지 전자감시제도 자체는 자유형의 대안이므로 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확고히 제도화하게 되면 더 나아간 사회통제에의 문호를 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¹⁸⁾

다만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이 제도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단기자유형(가령 6월 이하의)이 확정된 자 가운데, 이 제도의 실행 여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 제도의 적용에 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집행에 대한 차별적 대우(혹은 재량권 남용)의 비판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감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되,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차칫하면 재산수준에 따른 형벌의 차별이 생겨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 행정에 대한 감사의 문제 : 음부즈맨 제도, 유럽위원회의 관여

행정영역을 특별권력관계로 취급하거나 사법적·시민적 통제가 불가능한 특수영역으로 취급하던 것은 낡은 권위주의와 독재주의의 산물이다. 오늘날은 행정영역에 도 어떻게 사법통제 및 시민감시를 제도화할 것인가에 각국의 관심이 쏟아 있음은

18) 1997. 2. 4. 핀란드 헬싱키에서 대담한 국립법정책연구소(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Legal Policy) 소장 Seppäläe는 그같은 관점에서 전자감시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구에서는 스웨덴만 이 제도를 도입했고 다른 나라는 도입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같은 전자감시제도는 대단히 큰 정서적 역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 전체에 감시와 통제망이 널리 퍼져감을 의미한다고 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감옥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면 지지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안이 얼마나 대안으로만 남아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감옥에 대한 대체안으로 나왔던 것 이 시간이 지나면 그물망 확대효과를 일으킨 경험, 처음에 대체책으로 나왔던 안들이 보완책으로 번질되고, 비교적 경미한 세계에 대한 효과적 대안으로 자리잡게 되어온 경험도 반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은 국가가 전자정보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지지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과연 어느 국가가 그만한 도덕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가가 문제라는 취지였다.

두말할 나위가 없다.

스웨덴에서 행정에 대한 의부적 감시기관의 하나로 스웨덴의 음부즈맨 제도(The Parliamentary Ombudsman)가 있다.¹⁹⁾ 음부즈맨은 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현재 4인의 음부즈맨이 있으며, 전직 법관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스웨덴 의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선출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의 서비스는 생길 수 없다.

음부즈맨은 일반시민으로부터 진정(complaint)을 받거나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할 경우 일반행정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고 권고를 할 수 있다. 그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과 당국에서 존중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음부즈맨이 창립된 1809년부터 약 1세기간은 음부즈맨은 스스로 사안을 인지하고 수령자의 리스트를 조사하고 또 필요한 조사를 하였다. 즉 처음에는 일종의 특별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인지하면 음부즈맨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 공소를 제기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19세기에는 수많은 기소가 음부즈맨에 의해 행해졌지만, 점차 직접 기소하는 역할은 감퇴하고 대신 경고(admonition)를 주는 것을 주로 하게 되었다. 물론 그러한 경고도 언론에 공표되고 연례보고서에 인쇄되어 의회에 보고되므로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어떤 강제권이 없음으로 인해 '이빨없는 호랑이'라는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음부즈맨의 활동은 직접 인지조사보다는 오히려 민원인의 진정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 담당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음부즈맨의 수도 1명에서 4명까지 늘어났다. 지금은 음부즈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진정의 처리임은 이의의 여지가 없다. 민주사회에는 모든 시민들은 당국의 조치에 대해 법적 판점에서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갖는다는 관념이 음부즈맨의 정당화 근거가 되는 셈이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은 그의 공무수행이 음부즈맨에 의해 감사받을 수 있으며, 그가 적절한 공무수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시민과 음부즈맨에 의해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²⁰⁾

스웨덴인인든 누구나 음부즈맨에 진정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건연관성도 요구되지 않는다. 진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수료는 없다. 다만 익명의 진정은 접수하지 않는다. 진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법부, 경찰, 교도소 및 구치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형사사법관련 사항이

19) 1997. 1. 22. 필자는 의회 음부즈맨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아래 음부즈맨 제도에 대한 논의는 음부즈맨 1인, 사무국장 등과 대담한 것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20) Bengt Wieslander, *The Parliamentary Ombudsman in Sweden, Sweden: The Bank of Sweden Tercentenary Foundation*, 1994, p. 50.

전체 진정의 절반 가량 된다.²¹⁾ 다만 교정비리라 해도 그 내용이 경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크게 신뢰할 수 없거나 오해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사없이 기각', '조사후 비판의견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경고', 기타 '비판'이 다음과을 차지한다.²²⁾ 경우에 따라 형사기소를 하거나 징계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음부즈멘은 갖고 있으나, 최근 그러한 예는 거의 없다.

재소자들은 서신 발송권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제한은 음부즈멘에 보내는 서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정인이 요청할 경우 음부즈멘 비서실에서는 진정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발송해야 한다.

III. 스웨덴 교도소의 실태조사

스웨덴의 형벌 및 행형에 대한 대체적 지식을 얻고 난 뒤, 교도소에 대한 현지관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식적 측면에서의 정리는 예비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반적 소개보다는 현지방문조사의 특성에 맞추어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느낌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했다. 전체의 개요보다는 방문한 기관에 대한 섬세한 묘사에 주안점을 둔 보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다만 스웨덴의 교정시설을 각 단계별로 살펴본 것이므로, 필자가 방문한 개별 기관들에 대한 소개를 종합하면 스웨덴 교정의 실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²⁴⁾을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 공장형의 텔베르야 개방교도소

스톡홀름에서 기차를 타고 펼쳐지는 전나무숲과 호수의 풍광에 넋을 놓다보면 베스트로스 시에 도착한다. 다시 20여분을 택시로 가니 유명한 텔베르야 개방교도소

21) Wieslander, 앞의 책, 53쪽.

22) 교정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진정은 신체검사의 비인도성에 대한 것이라고 음부즈멘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마약의 교도소반입과 관련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대해 인권침해와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것이다.

23) 실태조사의 개요는 신동마, 1997년 4월호, 434~451면에 "전진 교정 현장 스웨덴 방문기, '그런데 교도소는 어디 있습니까'"에 일부 상재되었다. 거기에는 정확한 각종 상세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아울러 보완한다. 교도소에 대한 실태조사의 성격상 논리적 내용과 함께 필자의 느낌이 여기저기 녹아있다.

24) 스웨덴의 교정 실태에 대한 객관적 정리 및 개선권고안에 대해서는 가령 *Report to the Swedish Government on the Visit to Sweden, carried out by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rom 5 to 14 May 1991, Council of Europe* 및 *Response of the Swedish Government to the Report of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n its Visit to Sweden, 1992/10, Council of Europe* 참조.

(Tillberga open prison)가 나타난다.²⁵⁾

여기 소장(Bengt Ludvigsson)은 뜻밖에도 여성이다. 소장은 1961년부터 교도소에서 근무했고, 1973년 텔베르야 교도소가 신축될 때부터 여기서 일해왔다고 한다. 약간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가냘픈 인상이다 다리도 불편한 여성이었는데, 그것을 보니 스웨덴 답다는 느낌. 우리라면 신체적·성적 조건을 따져 소장은 커녕 교도관 임용도 되기 어렵지 않았을까.

때문에 첫 대화는 이 교도소에 있는 여성직원의 수와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여성직원은 대략 1/3 가량 되며, 오직 재소자 수송부서만 남자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소장 자신이 처음 근무할 때는 남자 상사와 동료로부터 불편과 불신의 눈초리가 없지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늘었고, 여성의 역할도 증대했다고 한다. 더욱이 재소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교도소가 남성문화적 요소를 갖는데서 생기는 문제점을 여성직원이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쌓이면서 여성직원이 교도소의 자연스런 일부로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위해를 느낀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를 포함한 어느 여성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나중에 소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조리사에게도 위험을 느낀 적이 없느냐고 거듭 물었더니 재소자들이 예의도 바를 뿐 아니라,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폐쇄교도소에서도 전혀 위험을 의식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장점 말고도, 여성은 자연스럽게 접한다는 것이 교도소 분위기를 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음미할 만하다.

텔베르야 개방교도소는 세가지 점으로 유명하다. 첫째는 소내 공장을 통해 시장지향적 생산작업을 하고, 그 댓가로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담당교도관이 재소자와 협의하여 재소자 재정계획을 듣고 실천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정기휴가제를 제일먼저 실시했고, 가장 많은 휴가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매 2주마다 72시간의 휴가를 부여한다.

텔베르야 교도소의 작업은 현대식 기계를 통해 조립식 주택을 만드는 것을 주로 하고, 그 외에 선반·가공작업을 한다. 교도소에서 만든 제품은 중간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판매한다고 한다. 조립식 주택은 주로 별장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이 단점이고, 때문에 불황기에는 교육과 직업훈련에 보다 치중하는 식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임금에 대해서는 애초에 노동시장 수준의 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했으나, 사회적 임금이 너무 빨리 오르고 또 불황의 여파가 교도소에도 미쳐 지금은 그 정도의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다른 교도소의 임금이 시간당 약 8크로나(1크로나당 125원 정도)인데 반해, 여기서는 23크로나로 3배 정도 높은 수준

25) 1997. 1. 30. 방문.

이다. 속련자의 임금은 25크로나까지 올라가고,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당 16크로나 정도를 지급한다. 재소자는 일부를 적립하고, 나머지를 피해자에 대한 변상, 가족에게 송금, 그룹활동비, 물건구매비 등으로 쓴다.

귀휴(歸休)제도에 대해서는 정기휴가는 물론 특별휴가까지 부여하는 교도소의 선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정기적 귀휴제도는 재소자의 석방후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필수적이며,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곳 재소자들은 2주에 한번 72시간의 휴가를 갖는다. 목요일 오후에 출발하여 일요일 오후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나 단 음주와 마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귀후에는 음주와 마약 테스트를 무작위로 실시한다. 교도소 입구에 차량이 여럿 세워져 있어 약간 의아했는데, 재소자들이 귀휴를 나갈때 타고갈 차량이란다.

어느나라나 귀휴를 실시하고자 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도주 가능성일 것이다. 텔베르야의 경우 연간 2000회의 귀휴 중 미복귀율은 1% 정도에 불과하고, 귀소시간을 어겼거나 음주마약관련으로 적발된 비율이 1% 이내라 한다.²⁶⁾

궁금한 것은 대다수가 왜 도주하지 않고 복귀하는가 하는 점인데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보았다. 형기가 비교적 단기이고, 정기적인 귀휴가 보장되어 있고 소내에서도 자유로운 면회가 가능하니 구태여 도주할 이유가 없다. 개방교도소라 도주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소내에서도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귀휴가 도주율을 유독 높일 이유도 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적립한 상당한 지금을 교도소가 관리하고 있는 점도 부수적인 고려사항은 될 것이다. 귀소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게 쫓기는 몸이 될 것이며, 잡히게 되면 더이상 귀휴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고 자유가 훨씬 제한되는 폐쇄교도소로 이송될 처지에 놓이는 등의 불이익도 심리적 압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개방교도소의 분위기가 인간적이며, 교도관들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교도소간의 선의의 경쟁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국의 교도소가 일률적인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나름대로 특징을 갖고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재소자가 볼 수 있도록 전산망에 띄운다. 그러면 재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를 신청할 수 있다. 텔베르야 교도소는 높은 임금을 받고 휴기가 잘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개방교도소로 올 조건이 갖추어진 재소자 중에서, 이곳에서 여석이 있을 때 받는다고 한다. 현재 약 17인의 대기자가 신청해있는 상태이다. 모든 재소자가 이

26) 스웨덴 전체적으로 미복귀 비율은 1%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kbom, 앞의 글 (1995) 참조.

곳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보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공장형 교도소이므로 일을 싫어하거나 치료를 우선적으로 요하는 자는 자신에 적합한 다른 교도소를 택할 것이다.

누구나 이곳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폐쇄교도소에 장기간 구금되어 있다가 이 곳에 오면 오히려 소크를 받고 적용상의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신입재소자들을 위해서 2주간의 입소자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교육내용에는 지켜야 할 규율, 생활경제, 직업훈련의 기초, 보건 및 쇠생활교육, 심리상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것도 배운다. 이러한 교육을 거쳐 재소자들은 자기의 시간과 금전, 건강을 자기 책임하에 관리해야 함을 배운다고 한다. 책임감과 자존심을 길러주는 것과 함께 전진한 사회인으로서의 기초를 닦게 하는 것은 개방교도소의 중요한 교육지표를 이룬다. 이러한 입소교육을 거쳐 다음 4주는 본격적인 작업실습을 하게 된다.

행정동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것도 특이한 모습이다. 가족들이 면회를 때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가족면회는 토·일요일에 허용되며, 가족들은 소내 어디서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친구의 경우의 경우에는 행정동의 면회실에서 면회한다. 물론 어느 경우든 면회에 대한 감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식당에 가보니 매우 폐쇄하고 청결한 분위기이다. 재소자 식당도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가보니 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음식은 교도소에서 매우 중시된다. 건강유지를 위한 조리법 강의도 자주 실시된다. 매주 식단이 게시된다. 음식을 만들 때 재소자는 원활 경우 보조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식사 후 공장을 방문해보니, 우선 작업장이 대단히 컸다. 한쪽에는 목재로 조립식 주택을 만들고 있었고, 다른 귀퉁이에는 선반 등 기계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장에 출입할 때는 작업카드에 시간을 찍고, 일할 때는 작업카드를 꽂아둔다. 열심히 일하는 재소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자도 있는 듯 했으나 전체 작업진도는 별 영향이 없고, 작업강요의 분위기도 없는 듯 했다. 상당히 현대식 기계를 사용하긴 하지만 왜 다른 작업은 않느냐고 물어보니, 재소자의 성분이 다양한지라 단순하면서도 일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할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답변하였다. 아마 목재를 다듬는 일이 주는 심리적 효과도 있을 법한데 이 점은 좀더 생각해볼 일이다. 작업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으려 했더니 재소자 한명이 다가와 자기 얼굴을 넣지 말라고 제지한다. 역시 재소자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는 상당부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을 나와 재소자들의 거방을 보기 위해 담당 교도관의 사무실로 갔다. 각 사동(舍棟)에 교도관의 사무실이 같이 있는데, 거기서 몇몇 재소자에 대한 신상카드

와 금전내역서를 뽑아볼 수 있었다. 사동 내에서 전화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보행의 자유도 인정된다. 다만 하루 4차례 있는 점호 시에는 자기 방에 있어야 한다. 특별거실이 몇개 있었는데, 거기 재소자들은 주간에는 외부통근작업을 하고 일과후 귀소한다고 한다.

다른 사동을 방문하니 거기에는 컴퓨터 교실, 샤워실, 체련실 등을 볼 수 있었다. 체련실에는 몇명이 땀흘리며 운동하고 있기에 물어보니 이 곳 청소를 맡은 재소자들이라고 한다. 당구대, 탁구대, 구기를 할 수 있는 실내운동장이 있어 거의 환상적인 느낌마져 든다.

우리의 경우 교도관은 반정역살이의 고달픔에다 외부의 시선도 끊지 않아 맞선을 볼 때 자기 직업을 소개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 곳 교도관²⁷⁾에게 직업만족도를 물어보았다. 자기들의 경우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직업 자체가 재소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사회적용을 돋는 것이라 보람있는 일이다. 형기를 마치고 나간 자들로부터 자주 상담편지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또 상대방에게 자기 직업을 말하면 누구나 호기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젯거리가 많아 대화를 끌어가기도 쉽다고 했다. 이렇게 떳떳하게 직업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백범 김구선생의 말씀을 떠올렸다. 백범 선생은 1910년대 서대문감옥의 죄수노릇을 하면서, “내 민족끼리의 나라에서 감옥을 다스린다 하면…감옥의 간수로부터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를 쓰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민의 불행한 일원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힘쓸 것이요, 일반사회에서도 입감자를 멸시하는 감정을 버리고 대학생의 자격으로 대우한다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토로했다. 간수와 죄수의 사이가 아니라, 대학교수와 대학생의 관계처럼 ‘선으로 지도하는 데 힘쓸’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스웨덴의 예에서 절실히 느껴지는 대목이다.

(2) 전원풍의 아스프투나 개방교도소

아스프투나(Asptuna)는 텔베르야와 마찬가지로 4등급에 속하는 개방교도소의 하

27) 일선 교도관들과 재소자들이 지속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접근하는 것이 스웨덴 교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간수(prison guard)라는 보안을 연상시키는 명칭이 이제는 접촉인사(contact person)라는 명칭으로 바뀐 대서도 제도의 목표와 관심을 엮어낼 수 있다. 교도관들은 주/야 조로 나뉘어, 주간 담당자는 접촉인사가, 야간 담당자는 보안에 중점을 둔 간수형 교도관이 배치된다고 한다. 접촉인사는 재소자에게 상담과 조언, 심리적 사회적 지원, 범죄와 악물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 재소자의 재정계획을 세우는 일을 돋는다. 재소자들의 변화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주임무인 것이다. 이렇게 접촉인사로 변화된 행형 담당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특성 및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즉 무섭고 권위적이고 명령에 충성하는 태도로부터 자기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대화지향적이며, 유연하고 독립적 인격을 지닐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Eckbom, 앞의 글(1995) 참조.

나이다. 담벽이 아니라 울타리가 쳐진 모습을 보면서 정문을 들어서니 눈앞에 군대막사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단층 건물 몇채와 약간 멀리 반원형의 호수가 눈길을 끈다.²⁸⁾

아스프투나는 처음에 40명 정원의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지금은 68명의 재소자를 수용한다. 스텝은 소장(Ulf Kjellsson), 부소장, 그리고 25명의 직원이 있고 6명이 상시근무하는 체제다. 직원당 10~15인을 관리하는 셈이다. 신입재소자가 오면 그에게 지켜야 될 규칙을 제공하고, 생활플랜을 직원과 함께 짠다. 직원은 재소자에 대한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상담도 한다.

재소자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작업을 하며, 가끔 소외 작업도 한다. 작업의 종류는 목공, 영농, 조리, 교육, 그리고 외부통근작업이 있다. 컴퓨터실이 있어 몇 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기서 재소자들의 컴퓨터교육도 있다. 임금은 시간당 7.6 크로나로 일반교도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텔베르야의 1/3 수준이다. 한주에 304크로나의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직업훈련 및 교육에 드는 시간에도 같은 임금이 지급되며, 질병으로 쉴 때에는 시간당 3.4크로나 정도가 지급된다. 정상 작업은 물론 교육훈련, 심지어 질병시에도 일정한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다.

재소자가 자신의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은 교도소측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아스프투나는 그 점에서 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재소자의 수입과 지출은 교도소측에서 정확히 관리하여 수지내역을 재소자에게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몇명의 수지표의 샘플을 얻어보니, 거기에는 작업수익과 현금지출 외에도 정기휴가를 위해 매주 15크로나 정도를 적립한 것이 눈에 띈다.

담배와 신문은 개별적으로 구입한다. 편의품들은 주 1회 외부에서 와서 판매한다. 커피와 차를 자유롭게 끓여 마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교도소든 술과 마약은 엄격히 금지된다. 알콜에 대한 스웨덴의 제한주의는 역사적 산물이다. 한세기 전만 하더라도 스웨덴인들은 보드카 류의 독주를 즐겨 마셨다고 한다. 19세기 말부터 노동운동과 금주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그것이 20세기 선친산업으로 도약하는 정신적 기틀이 되었다. 1930년대부터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배급제나 전매제와 같은 갖가지 방법으로 알콜을 규제했고, 그에 따라 술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되었다. 지금도 지도층일수록 금주하는 전통을 지킨다. 범죄자에게 알콜을 금지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사회의 알콜 소비량과 폭력범죄(살인·폭행 등)와의 긴밀한 힘수관계에서 구해진다. 스톡홀름 대학의 헨릭 탐(H. Tham) 교수는 양자간의 관계를 도표화하여 알콜소비와 폭력범의 비율이 거의 일치함을 입증한 바

28) 1997. 1. 29. 방문.

있다.

마약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와는 달리, 스웨덴은 마약에 엄격한 처벌을 한다. 판매는 물론 단순소비도 최근에는 처벌받게 되었다. 교도소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마약의 밀반입과 마약거래이다. 알콜과 마약사용이 적발되었을 때 주어지는 징벌은 5일까지 협거를 연장하는 조치이다. 의심날 때마다 소변검사 등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마약의 경우 입소시 테스트를 한 뒤 수시로 검사를 실시한다. 재소자가 마약과 알콜측정을 거부할 때는 강제 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소내 규율에 적용하지 못하는 자로 간주하여 다른 교도소로 이송조치를 할수밖에 없다. 폐쇄교도소로의 이송, 정기휴가의 연기, 외부통근의 연기 등은 경미한 징벌보다 사실상 제재효과는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교도소의 입소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1년 미만의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자는 처음부터 여기에 입소할 수 있다. 다른 부류는 장기형을 살다 잔형이 6-8개월 정도일 때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로 개방교도소로 이송되어오는 경우이다. 그러나 처우내용에 있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곳에서도 물론 귀휴제도가 시행된다. 매2개월마다 144시간의 귀휴가 허용되는데, 가끔은 72시간을 먼저 쓰고 또 72시간을 쓰는 식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범죄를 저지르면 귀휴는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 귀휴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만으로는 도주죄와 같은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규율위반으로 처리된다. 정기휴가 이외에 특별휴가도 있는데, 재소자에 대한 법정절차가 있거나 변호사면담, 사회복지 요원과의 면담 등의 경우나 배우자가 아플 때 특별히 인정된다.

모든 개방교도소에서는 서신검열은 전혀 없다. 전화도 24시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단지 휴대용 전화만 금지된다. 재소자와 교정직원 모두 간편한 사복을 입고 근무한다. 교정직원은 한 교도소에 계속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장은 여기서 5년, 부소장은 15년을 근무했고, 27년동안 근무한 교도관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 교도소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자기 교도소에 대한 애착감을 갖고 교도소를 가꾸게 되는 잇점이 있다고 한다.

외부인사의 면회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허용된다. 면회시에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약과 알콜의 반입을 검사하기 위해 방문객을 검사할 수 있고 소지품도 조사할 수 있으나 강제로 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를 거부할 경우 면회를 불허할 수는 있다. 접견장소는 특정되지 않고, 재소자의 방이든 야외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성적 접촉도 얼마든지 가능하나, 교도측은 그 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대학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 교도소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단층의 막사같은 행정동 옆에 pavillion이라 불리는 별관과 재소자의 거주실이 있었다. 별관에는 운

동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었고, 당구대와 탁구대를 볼 수 있었다.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어도 좋으냐고 했더니 재소자의 방이나 얼굴을 찍을 때는 재소자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한 재소자의 방을 그의 승낙을 받아 들여다보니 침대와 책장, 책꽂이, 텔레비전, 웃장,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맑은 날씨를 즐기면서 호수 쪽으로 접근하니, 거기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고 탁자와 야외바베큐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다. 보트도 있어 여름에는 가끔 타기도 한다고. 도중에 양, 닭, 돼지를 몇마리씩 기르고 있었는데, 상업용보다는 재소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라 한다. 전체적으로는 한적한 대학캠퍼스와 같은 인상이었고, 재소자의 방의 설비와 청결함은 대학 기숙사보다 나았다.

점심식사 후에는 작업장을 방문했다. 몇몇 재소자들이 생선을 담을 나무상자를 만들고 있었다. 약간의 숙련도만 있으면 1시간에 60개 정도를 조립할 수 있으며, 제품은 수산회사에 공급한다고 한다. 이전에는 목제 액자 등도 제작했으나, 지금은 생선상자만 만든다고. 틸베르야에 비하면 공장은 아담한 크기였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는 모양이다. 하지만 공장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농촌적 분위기였다 정서적 순화에 도움이 될 시설이라는 인상이다.

(3) 담벽 속의 자유, 큐라 폐쇄교도소

스웨덴에서 가장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1급 폐쇄교도소인 큐라 교도소(Kumla closed prison)는 스톡홀름으로부터 3시간 떨어져 있다.²⁹⁾ 한적한 시골역에 내리니 소장(Arne Granell)이 기다렸다가 자기 차로 교도소까지 안내했다. 무시무시한 교도소라 들었는데, 걸보기에는 그리 음침하지 않고 산뜻한 직사각형의 담벽속에 들어있는 건물이다. 이 지역에 교도소를 지을 때 지역사회의 반대가 없었느냐고 하니 여기서도 그러한 어려움은 적지 않은 모양이다.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교정직원들도 여기서 같이 생활하는 테 결코 안전상의 문제가 없음을 납득시키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미터의 높은 담도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여 외부환경과의 조화를 피하였다.

소장실로 직행하여 교도소의 개요를 우선 들었다. 원래 310명을 수용정원으로 하여 지어졌으나 현재 210명이 수용되어 있고, 그 규모는 스웨덴 최고라고 했다. 그러나 몇천명의 수용을 예사로 하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수용인원이 가장 적은 편에 해당할 것이다. 직원은 300명 정도이며, 그 중 35-40% 정도가 여성이라고 열심히 셈을 하며 달했는데, 사실 직원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것은 더이상 중요한 의미가 없는 모양이었다.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이기에 여성직원의 비율이 낮을

29) 1997. 1. 31. 방문.

것이라는 한국식 예측은 여기서도 벗어났다. 여성의 유일한 제약이라면 소변검사를 실시할 때 약간 곤란한 정도랄까.

전체적 구조는 가운데가 행정구역이고 좌우로 특별사동구역과 일반사동구역이 있고 일반사동의 옆에 공장이 있다. 각 구역 사이는 지하통로로 연결된다. 지하통로의 총길이는 600미터 정도이다. 나중에 지하통로를 가보니 벽면 전체에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굉장한 작업은 2명의 벽화가를 고용하여, 내부 재소자의 보조를 받아 이루어졌다고 한다. 1970년대 초반 스웨덴 교도소에서 커다란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을 때 재소자들은 이 지하통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 불만을 고려하여 더이상 음산한 분위기를 느끼지 않도록 밝은 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스웨덴의 1급 폐쇄교도소는 모두 3개인데, 여기는 장기형을 선고받은 자와 일반 교도소에서 관리관련한 자를 수용한다. 여기서도 가장 위험한 문자로 취급되는 자는 탈출 가능성 높은 자, 외부와 연계하여 마약거래를 하는 자, 동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된다. 탈출을 막기 위한 시설로는 높은 담을 이중으로 둘러치고, 모든 문과 벽에는 감시카메라를 작동시키며, 중앙통제실에서 접수감시를 하는 것이다. 지하통로도 탈출을 꾼란하게 하는 시설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다. 그동안 어느 정도의 탈주자가 있었는가 물어보니 32년의 역사에서 25명이 탈출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들려보니 탈출한 자들이 사용한 도구와 재소자로부터 암수한 마약도구 등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그것도 재미있는 착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용자 중 2/3는 외국인이라고 한다. 나중에 마르텐스(P. Martens) 교수의 논문³⁰⁾을 찾아보니 스웨덴에서 외국인 범죄의 비율은 대략 15 내지 20% 정도인데, 이는 거주외국인수가 5% 내외인데 비하면 약 3배 정도의 범죄율을 보이는 셈이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율수록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 1990년 통계를 보면 살인의 경우 30%, 강간의 경우 40%, 강절도의 경우 22%, 마약범죄는 18%, 교통 범죄는 15%가 외국인이었는데, 최근에는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이민유입자의 증대로 말미암아 더욱 중대하는 경향이다. 때문에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큐라고도 하는 경우 외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되었다.³¹⁾

폐쇄교도소에서 면회는 면회실에서 이루어진다. 소내에는 모두 5개의 면회실이 있는데, 3개는 3인 정도가 입실할 수 있고, 2개는 5~6인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이다. 면회신청은 전화로 하고, 사전에 신청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주에 한번씩,

30) Martens, P. *Criminality among foreign citizens in Sweden*, Nordisk Kriminologi (1992), I, p.28.

31) 북한인도 1명 있었는데 7년전 마약거래로 처벌된 것이라 했다. 연민의 느낌이 들어 면담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부소장이 전화로 의사를 타진하였던 바, 그 쪽에서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 먼 곳에까지 낭비한의 불신의 그림자가 남아있어 순간적으로 안타까운 느낌이었다.

한번에 2시간 정도의 면회가 이루어진다. 폐쇄교도소라 할 지라도 가족간 면회를 감시하는 것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 이외의 경우에는 교도관도 동석한다. 이렇게 제한적인 면회를 하는 이유는 마약반입 금지가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밖에 범죄모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폐쇄교도소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통화를 임의대로 하지는 못한다. 통화를 원하는 재소자는 전화기를 들고 교도관에게 연결을 요청하면, 교도관이 수화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연결시켜준다. 교도소측은 재소자의 가족명단과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 가족과 통화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으며, 통화내용을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주지시킨다. 실제로 가족이외의 자와의 통화는 빈번하게 청취 하지만, 가족간 통화는 의심날 때 한해 제한적으로 청취한다고 한다. 일종의 정벌에 해당하는 특별사동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통화는 더욱 제한된다. 하지만 거기서도 통화가 언제나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다.

장기형을 선고받은 자는 보통 룸라와 같은 1등급 교도소에서 형을 시작한다. 7년 형을 받은 재소자라면 대략 3년 정도를 여기서 보내고 이후 순차적으로 나은 등급으로 이송된다. 형기이 길수록 1등급 교도소가 최종지인 셈이다. 스웨덴은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무기형이 최고형인데 전국에서 대략 65~70명 내외의 무기수가 있다고 한다. 50여명의 사형수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고, 1000여명의 무기수가 살고 있는 우리의 경우가 아득게 비추어진다.

어느 나라나 교도소 재소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중범죄일수록 남성의 비중도 높아진다. 때문에 폐쇄교도소의 경우 특히 성적 박탈감으로 인한 폭력과 호모 씨슈얼리티의 문제로 고민한다. 여기서 재소자들이 느끼는 성적 박탈감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무감독면회 덕분에 그러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했다. 스텝들이 그런 문제를 의제로는 의회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 역시 가족간의 면회, 개방적 교도소의 경우 정기귀휴제의 실시 등의 요인이 교도소내의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셈이다.

스웨덴의 혐대교정은 1970년대로부터 비롯된다. 70년대 전반에 전국교도소에서 재소자조합이 결성되었고, 대규모의 단식투쟁이 있었다. 5000여명의 재소자 중 절반이 거기에 가담했고, 법무부에서는 재소자 대표들과 면담하여 요구를 정리했다. 재소자들은 주로 귀휴제의 실시, 접견기회의 확대와 접견시 감독을 하지 말 것, 재소자의 프라이버시 존중, 전화부스의 설치, 서신검열의 중지, 교도작업에 대한 임금의 인상, 재소자조합의 인정 등을 내세웠다. 법무부측은 재소자의 집단적 권리는 부인했지만 나머지 요구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하면서 행정법을 개정하고 교정제도를 개편하였다.³²⁾

32) 1970년대 초기 감옥폭동 및 감옥개혁운동은 전반적인 행정방침을 재조정하도록 했으며, 몇 가지 분야에서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재소자 측과 교도소 측의 성실한 대화의

콤라고도소에서 이러한 감옥폭동의 양상이 어떠했던가 물어보니, 71년 바깥에 있는 정치집단과 연계된 폭동이 있었고 항의시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또 지붕창문을 깨고 옥상에 올라가 항의시위도 했고, 담밖에서는 연대시위를 하는 등 광장했다고 하면서 그 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뒤 법무부에서 개선사항을 마련한 뒤로부터 집단적 움직임은 수그려들었고, 요즈음은 가끔 한두명이 단식농성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재소자들의 의견을 교정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교도소측은 각 섹션별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주 1회 재소자 대표와 교도소측이 회의를 한다. 이 회의에서는 재소자의 관심사와 고충사항이 논의된다. 재소자와 교도소측의 대화내용은 기록되며, 그 회의록에 재소자대표와 부소장이 각각 서명을 하고 한부씩 나눠갖는다. 재소자의 관심은 주로 식사, 이송, 전화, 신체검사 등에 집중된다. 재소자의 대표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가끔 문제점을 느끼지 않는가 물었더니, 자신들은 회의를 통해 재소자의 관심을 확인하고, 재소자의 불만을 예방하며, 교도소측의 방침을 이해·전달하는 통로로도 활용할 수 있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한다.

소내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교정직원의 사기와 재량권에 대해 물어보았다. 교도소장은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지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부소장이나 각 구역의 책임자도 자기의 직분 범위내에서는 마찬가지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재량권의 부여는 곧 교정활동을 위한 동기부여의 의미도 지닌다. 교도관의 전직 이직율이 대단히 높은 우리 설정을 생각하며 교도관들의 자부심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추론해보니 ▲자기 직분 범위내의 재량권의 존중 ▲한 교도소를 자기의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쓸는 정성 ▲직원 수가 많아 피로도 다른 직업과 차이가 없다는 점 ▲재소자의 긴장관계에 놓여있지 않고, 재소자에 대한 상담과 생활지도를 통해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³³⁾

결과 폭동과 위기는 진실적인 방향의 개혁안으로 수렴되었다. 의회도 새로운 안을 인정했으며, 그에 따라 전면적인 교정개혁의 단계를 맞았던 것이다.(상세는 한인섭, 복구의 형사정책 연구-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1994), 34쪽 이하 : Mathiesen, T. & Roine, W.(1975), *The Prison Movement in Scandinavia*, in Bianchi, H. et al.(eds.), *Deviance and Control in Europe*, London: John Wiley & Sons, p.85 이하 참조.)

1974년부터 새로운 법률 및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새로운 교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범죄에 대한 반응으로써 프로베이션을 가능한 확대한다.

▲사회적 서비스 및 지지기관에 대해 수형자는 다른 시민과 같은 접근권을 가진다.

▲수형자는 시설내 보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의 가정과 가까운 지역교도소(local prison)에 거주한다. 이는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서비스 및 지지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이다.

33) 최근의 주목할 만한 행형실태상의 변화의 하나는 교정체계의 탈집권화 경향에서 보여진다. 우선 전체 교도소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구조가 대폭 바뀌었다. 교도소장이 전권을 휘두르던 체계로부터 지금은 재소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선 교도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대폭 이

식사 후 소장의 안내로 특별사동을 먼저 방문하였다. 방이 모두 12개 정도 있는데, 현재는 3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아마도 스웨덴에서 가장 위험하고 까다로운 범죄자가 수용되어 있을 이곳에서는 여성 교도관 2인과 1인의 남성교도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여성이 근무하기에 위험하지 않느냐고 또 한국식 질문을 던졌더니 그런 우려는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활동할 때는 직원 3인이 1조가 되어 움직이며, 수용자수가 늘면 그에 따라 교도관 수가 늘어난다. 재소자의 거실은 이제껏 본 것 중에 가장 열악했다. 침대 하나와 변기 하나가 있으며, 텔레비전도 탁자·의자도 없었다. 또 방문을 안에서 잠글 수 없고 밖에서만 열쇠로 여닫게 되어 있었다. 운동도 한정된 공간내에서만 허용되는데, 그래도 운동장은 농구장 정도의 크기는 족히 되어보였다. 여기서도 정교한 전자감시장치가 작동하지만, 거실 내부는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칙이다. 심한 경우에는 문을 일부만 열고 손을 내밀게 한다음, 수갑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면서 도구(수갑, 방패, 문고리)를 보여준다.

지하통로를 통해 벽화를 감상하면서 특별사동에서 공장으로 곧바로 이동하였다. 공장에는 현대식 기계가 돌아가고 있으며, 기계의 성능이나 제품의 질이 텔레르야 보다 오히려 더 우수하지 않는가 느낌이었다. 장기수의 경우 숙련도가 더 높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와의 기능공들이 와서 기술훈련을시키기도 하고, 전문평가단이 와서 엄격히 심사한후 기능자격증을 정기적으로 부여한다고 한다. 일하는 재소자들이 얼마 보이지 않기에 물어보니 오후중의 휴식시간이다. 작업중 휴식은 오전에 1회, 오후에 1회 규정되어 있다. 여러 재소자들이 휴게실에 들려앉아 차를 마시면서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돈내기 게임이 아니면 제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다른 쪽을 가보니 열심히 신발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옆에는 바코드를 제작하기도.

일반사동으로 이동해보니 여러 재소자들이 휴게실에 모여 담소하고 있었다. 빌티 3국에서 온 자, 흑인, 터키인, 남미인 등 여러 인종이 섞여 있었다. 모두 폐활한 얼굴로 대화하는 분위기에서 교도소가 주는 긴장감이 별 느껴지지 않았다. 당신나라의 재소자는 어떤 대우를 받는가 물기에, 이 곳을 방문한다면 별천지라 생각할 것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근무시간 중에 왜 공장에 앉아고 여기 있는가 물어보니 바로 자기들은 청소, 세탁을 담당한다고.

한 재소자의 거실을 그의 혀黠을 염려 들어다보았다. 개방교도소의 거실과 마찬

양되었다. 일선 교도관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재소자의 수용, 계획, 프로그램, 귀휴 등에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상부의 개임은 장기수 및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경우에 국한된다. 과거의 경력 때문에 여전히 권위적이고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층부를 새 시스템에 적응시키기 위한 연수를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탈집중화된 책임(decentralized responsibility)의 구조는 모든 정부기구의 탈집중경향과 부응하는 방향이기도 하며, 교정 행정이라고 특별히 예외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지로 침대, 책상, 의자 2개, 텔레비전이 비치되어 있었고, 서가에는 상당히 많은 책이 꽂혀있었다. 어디서나 1인 1실은 부인할 수 없는 원칙임이 확인된다. 항공기 관련 책이 많이 꽂혀 있기에 물어보니 전직 파일럿트였는데, 마약거래와 관련하여 여기에 오게 된 듯하다. 계속 한국설정을 물어보는데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 무엇보다 재소자들의 표정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 가장 놀라웠다.

일반사동에는 탁구장, 체련실, 농구와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랫층에는 사우나와 샤워시설이 있었다. 사우나도 있으나고 하니 복구에서 사우나는 사치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중범죄자를 수용한다는 시설에서 재소자들과 아무런 긴장없이 보행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일견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시 행정실로 돌아와 마무리 정리. 스웨덴은 복지제도는 교정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고 물었더니, 교도소는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답변부터 시작하였다. 소장이 보기에 교정복지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10년 정도 뒤쳐져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최근의 경제불황이 교정복지에 기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감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재소자의 생활처우를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운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깔고 있다고 한다. 결국 예산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감축과 시설유지비의 감축 밖에 없는데, 지난 3~4년간 40명의 직원을 감축해야 했다고. 물론 해고된 직원은 실업수당을 받고 전직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다. 예산감축의 또 다른 측면은 재소자의 임금을 올릴 수 없는 테서도 보인다. 시간당 8크로나의 수준으로 현상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사와 생활처우를 악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구의 교정복지는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예외적인 수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더니, 소장도 물론 공감한다. 라트비아 교도소를 최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매우 열악한 처우에 놀랐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나중에 만난 스웨덴 교정의 전문가인 노만 비숍(Norman Bishop)은 스웨덴의 선진적 교정복지는 한편으로는 그나라의 경제수준과 관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소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열악한 범죄자 처우는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시민적 자각에 비례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중산층의 관용과 지지가 선진복지를 가능케 하는 원천이라는 것이다.³⁴⁾

(4) 최신식 설비의 후당에 구치소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후당에 구치소(Huddinge remand prison)까지는 1시간 정

34) 1997. 1. 31. Norkoepping 시에서 면담.

도 걸린다.³⁵⁾ 스톡홀름 시경찰서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입구를 알 수 없어 아무 테나 누르니 목소리가 들린다. 나중에 알고보니 중앙통제실에서 폐쇄회로를 통해 누가 접근하는지 훤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소장(Hans-Olof Larsson)을 만나보니 최근에 신축한 구치소라고 했다. 보통 스웨덴의 구치소는 경찰서 건물의 윗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관이 구치소로 와서 직접조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서 위층에 구치소를 두게 되면 여러 처우상의 문제점이 노출된다. 특히 운동장을 옥상에 만들수 밖에 없고 운동시간도 확보해주기 쉽지 않으며 상호접촉도 어렵다. 시설을 개량하려 해도 건물 상층부에 있어 쉽지 않다. 때문에 비인도적이고 품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교문 및 비인도적이고 품위를 저하시키는 처우·형벌의 예방을 위한 유럽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이 위원회에서는 그밖에도 환기장치와 차광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³⁶⁾ 스웨덴 정부도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했지만, 기존의 시설로는 한계가 있어 아예 인권위의 기준에 맞는 최신 구치소를 신축한 것이다.

건물은 중앙부와 양 날개로 되어 있는데, 4~7층이 구치소로 사용된다. 각층의 날개마다 12명 정도의 미결수용자가 있고, 작은 실내 체련장과 세탁장이 있었다. 실내체련장에는 기본운동용구가 잘 갖추어져 있다. 겉으로 보기에도 몇백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천만에도 수용정원은 120명이란다. 구치소내에는 작은 도서실이 있고, 1주에 두번씩 신문과 출판물, 과자류 등을 판매하는 이동식 키오스크가 오며, 요청이 있는 경우 시내서점과 연결하여 책을 구입할 수 있게 일선한다.

외부와의 통신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전화는 긴 줄이 달린 전화기를 바꿔달린 수레로 운반하면서 통화를 원하는 재소자의 방앞에 가서 번호를 눌러주고 수화기를 방안으로 넣어준다. 미결수의 경우 공모나 중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통화의 비밀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화 자체는 개인적인 사항이기에 허용하며,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다고 할 뿐이다. 다만 번호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 따라 절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수용자의 방을 하루 한두번 들여다보며,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노크를 한 뒤 열쇠로 문을 만든다.

거실은 1인 1실의 원칙이다. 수용정원이 찬 적이 없으므로 이 원칙은 잘 지켜진다. 방안에는 침대와 책상, 의자, 텔레비전이 비치되어 있으며, 작은 화장실도 있다. 차광과 환기장치는 유럽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기술적으로 잘 개선해놓았다. 그렇게 폐쇄회로가 둘러쳐 있어도, 각 방안을 폐쇄회로로 엿보는 것은 법률상

35) 1997. 1. 24. 방문.

36)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tatement concerning the Report of the 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95. 9. 21. 참조.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재소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배려가 있는 것이다.

운동은 하루 1시간 정도로 규칙화되어 있고, 외부운동장과 간막이처리된 옥상운동장, 실내 체현장에서 운동할 수 있다. 특히 건물의 상층부에 구치소가 위치한 결함을 완화하기 위해 지상에 운동장을 설치하여, 재소자들이 땅을 밟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식사는 20명 정도를 수용하는 작은 식당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음식은 조리담당직원이 맡는다. 교정직원들은 별도의 룸에서 식사하지만, 식사의 종류는 재소자와 같다. 그래서 재소자들이 식사에 대해 불평할 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했다. 단기 간 머무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작업은 개별방에서 단순한 종류의 것만 가능하다. 간호사는 정식 직원으로 상주하며 의사들은 주 몇시간의 단위로 진료계약을 맺어, 이 의사가 시설에 와서 진료와 처방을 내린다.

외부와의 접촉은 교회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는지라, 수용자의 면회는 주3회 정도 허용되며, 면회시 마약소지 등과 관련하여 신체검사가 있을 수 있다. 수용자는 면회 전후에 신체검사를 받는다. 면회실 내에는 작은 책상 1개와 의자 2개, 긴 소파가 하나 있었다. 면회시간은 1시간 이내이다. 면회실 내부를 엿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여전상 성적 접촉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재소자는 제복과 사복 중에 택일할 수 있다. 소내에서 다수는 제복을 입지만, 외부로 출입할 때는 사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복착용권이 보장된다. 사복을 착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잘 훈련된 전문수송반이 보안장치가 잘 된 차량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않는다고 했다.

교도관들이 보안과 탈출방지에 신경을 쓰다보면 교화적 측면은 그만큼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전장치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첨단감시장비가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어, 인도적 행정도 고도의 전자통제망 하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불쑥 들었다. 수용자의 방과 복도, 시설을 들려본 느낌은 음침한 감옥이 아니라 깨끗한 병원의 그것이었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 시설과 처우, 자유제한의 정도 면에서 구치소가 교도소보다 열악한 느낌이었는데, 유럽위원회의 개선권고도 구치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데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선진교정」을 향하여

스웨덴의 교정제도는 국제적 수출품이자 연구자들을 유인하는 상품이다. 나보다 두달전 스웨덴의 교도소를 방문했던 한 일본인 교수는 시설을 들려본 후 「그런데

교도소는 어디 있습니까」고 우스개로 되물었다고 한다. 전체적인 인상은 어둡고 침침한 수용소가 아니라 폐쇄하고 청결한 캠퍼스나 병원과 같은 것이다.

나에게 스웨덴 생활의 이모저모를 가르쳐주었던 한 시민(Eva Abelin)은 기관을 방문하여 공식적 안내와 설명을 듣고 그것이 제도의 전부인양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의를 주었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도 많은 문제점에 둘러싸여 있고, 사회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모습을 떤 사회주의이며, 개인을 국가앞에 대단히 취약한 존재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하나의 스웨덴의 수출품인 의회 음류즈만 제도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당간의 합의로 선출되는 까닭에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고, 문제에 대해 강제력을 갖지 못해 이빨없는 호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까다로운 사건에는 절절 고는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발견된다.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더욱이 재소자들의 느낌,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 일반 시민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만 그 사회속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이 이미 잘 조율된 방문일정에 따라 재소자가 아닌 교도소 측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조사란 수박겉핥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래도 수박을 보고, 겉을 학으면서 속내용을 들여다보려 진력한 것은 낙후된 우리의 교정현실에 대한 출구와 시사를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재소자 수는 그나라의 범죄의 질량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과거 사회주의 정권下에서 엄격한 사회통제 하에 범죄수는 적었지만, 거대한 수용소 군도가 작동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북구에서 인구 10만명당 구금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핀란드였다. 그러나 핀란드는 형벌개혁과 행형개혁을 통해 지난 20년간 구금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 동안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되었는데도 말이다. 이는 형벌수준이 범죄수준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라의 형사정책의 기조와 형벌관, 나아가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반영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무엇보다 정치체제가 억압적이고, 경제적 불균형이 심할수록 구금율이 높아진다는 경험적 조사도 나와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높은 구금율과 가중된 형량, 억압적 형사정책관이 비판되지 않으면 안된다.

혹독한 형벌을 통해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사상도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비인도적 · 억압적 장벌은 단기적인 효과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범죄자의 악감정과 보복심을 증대시킨다. 교정여건의 악화는 재소자의 소외감을 증폭시키고, 그 부정적 감정은 지역사회내의 범죄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데 대한 시민적 자각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현법조항은 범죄한 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자유형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범죄의 댓가로 자유형이 주어질 때 그것은 인간의 소중한 자유를 박

탈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부가적 고통을 과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교도소에 있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은 최소한 주어지며, 시설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

자유형이 가족전체에 대한 고통으로 확대되어 가정파괴적 효과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소자와 가족간의 접견이 충분히 허용되어야 한다. 가족간의 친밀감과 애착감을 누릴 수 있도록 교도소측의 감독은 최소한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부부간의 신체적 접촉과 정서적 교감을 할 여지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을 범죄예방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라 할 때, 가족간의 접촉과 애착이 크질수록 재범의 위험성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외부와의 전화통신의 기회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징역형은 재소자에게 작업을 강제하지만, 그 작업의 댓가까지 박탈해서는 안된다. 재소자는 시민이지 국가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행형법에는 임금이 아닌 작업상여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한 뿐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예에서 보듯이 임금제도의 실사는 석방후 자금을 적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정작업의 종류도 보다 생산적이고 현대적이어서,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을 곧바로 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교도소를 지역사회와 가능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폐쇄교정이 원칙이 아니라 개방교정이 원칙으로 되어야 하고, 장기형을 받은 재소자라 할지라도 점차 개방교도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자기개선의지가 생겨날 것이다. 단기형을 받은 자를 폐쇄교도소에 수용함은 범죄와의 접촉을 강화하는 반면 교정효과를 감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보다 개방교도소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자유를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게 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귀환제가 정례화될 필요도 절실하다.

교정처우의 개선에 대하여 예산타령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정당국의 의식과 시민들의 가치관을 달리할 때, 돈이 들지 않고도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분야도 얼마든지 있다. 교도소 내에서 담배와 기호품(커피차) 등은 당연히 허용될 만하다. 자판기만 설치하면 추가비용도 들 필요도 없다. 목조건물 시대의 교도소에는 화재위험을 우려하여 담배를 금할 수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금할 이유가 없다. 담배를 허용하는 것은 그것을 들러싼 교정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정직원들의 높은 이직율과 사기저하도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교도소를 보다 소형화, 다양화하여 교정직원들이 관리와 보안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정과 상담 위주의 전문복지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녀가 같이 있는 공간이

자연스러울진대, 교도소에도 여성인력이 활발히 진출하여 교정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의 제도와 운영이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교정시설도 무엇보다 인간적 품위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교정에서 가장 시사받을 점은 형벌을 집행하되, 인간의 가치와 품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A Visiting Research on the Swedish Prisons and Penal Practices

In Sup Han*

This is a visiting research of the prisons and penal practices in Sweden. I visited Sweden and Finland for two weeks from January, 1997. I discussed with a variety of experts who majored in criminology and penology, and practiced in the penal systems in Sweden and Finland. My original aim was to survey how the so-called most advanced Swedish prisons work, and how the people response to their penal systems. From my research tour, I could not only visit the prisons but also touch the changing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in Sweden.

Some experts commented the policy orientation in Sweden has shifted from the welfare approach to the repressive approach. But, such a comment might be correct within the Sweden. Swedish policy might be situated on the edge of welfare from the comparative spectrum.

New kinds of sanctions in the relation to the probation been introduced since the late eighties of the last century. In addition to the community service, the contract treatment is exercised. By the contract treatment means that the short-term imprisonment should be suspended under the condition of the treatment assigned to the person under influence of drug/alcohol. New experiment in penalty is to introduce the intensive supervis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 Offenders may be sentenced, by their applications, to serve the electronic monitoring only as an alternative to the imprisonment for 3 months or less, not as a kind of probation. Three years of experiment is reported to be satisfactory, despite the dissent opinion afraid of the net-widening effect of such a new

penalty.

The prisons I visited during my stay in Sweden ranged from a remand prison(Huddinge), two open prisons(Asptuna, Tillberga), to one closed prison(Kumla). From the eyes of a Korean scholar, the most impressive things were as follows :

The openness, normalization, and community-oriented approach as a basic principle,

The salary system to the prison labour instead of the nominal bonus system.

The unsupervised visitation program and the opportunity to furlough,

The one-room for one-prisoner, similar to a dormitory room instead of the typical solitary confinement,

The existence of female prison officers numbering more than 1/3 of all officers instead of the masculine atmosphere,

The communicative attitude of the prison officer called contact person instead of the prison guard, and

The clean and high-quality articles including the athletic tools, and coffee machine in the self-cooking places.

The lesson from Sweden is the assertion that the standards of prison in one country don't reflect the seriousness of the crimes but the dignity and tolerance of the people of the country. The prisoners need to be cared, educated, treated, and rehabilitated. As a person with the dignity of human being, the prisoner should maintain the contact with outside, and his privacy and freedom should be affirmed and respected so far as the requirement of the security of the institution is not endangered. Swedish model in penal spheres might be the future to many countries aspiring more humane, more advanced prisons and alternatives to them.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美國의 電子監視制度 評價를 通한 韓國的 適用 패러다임*

圓光大 警察行政學科 教授 梁 汝 承

- I. 論議의 背景
- II. 電子監視制度의 概要
 - 1. 刑事政策의 意味
 - 2. 沿革
 - 3. 電子監視方法의 類型
- III. 運營實態 및 評價
 - 1. 運營實態
 - 2. 評價
- IV. 基本的 適用 패러다임
 - 1. 電子監視制度의 本質的 限界 認識
 - 2. 手段과 目的의 交換的 패러다임에 대한 理論的 기틀 마련
 - 3. 電子器機의 脆弱性에 對備한 技術的 Infra 構築
 - 4. 國民의 認識 提高
- V. 結論

I. 論議의 背景

전통적인 자유형의 위기가 도래하면서 犯罪者處遇에 대한 刑事政策의 무게중심이 시설내처우로부터 사회내처우로 점차 이동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까지 처우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기되어 실시되었으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가운데 정착된 대표적인 처우방법으로는 영국에서 그 터전을 다진 社會奉仕命敎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바 있는 電子監視制度(Electronic Monitoring or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를 손꼽을 수 있다.

특히 전자감시제도는 최근 사회내처우의 새로운 전개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서 1960년대 중반에 아이로니컬하게도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봄직한 다소 기발한 발상으로부터 출발하여 Anthropotelemetry(인간행동원격계측공학), 또는 電子假釋放(Electronic parole) 등 생소한 용어로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 운용되고 있고 지금도 확대화의 경향이 높은 영역이다.

전자감시제도는 犯罪者를 교정시설내에 수용시키는 대신에 자기 집 또는 일정 범위의 장소에 구금시키고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는 중간처벌이라고 정의된다. 이 제도는 교정시설의 過密化 현상을 개선하고자 강력범죄자가 아닌 범죄자를 차별적으로 代替刑罰화해 보자는 것,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과다한 업무량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해보자

는 등을 그 존재가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줄일 수 있고 운영경비가 절감되며 前科者 낙인의 염려가 적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처벌이 너무 미약하고 사생활 침해나 가족 학대우려 등 비인간적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제도라고 흔히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내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빠르면 2002년에 도입할 예정이라는 관계당국의 발표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논문에서는 소위 전자감시제도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現況과 問題點을 소개·평가함으로써 상술한 제반문제점들과의 연계시각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의 제도도입에 대한 자그마한 시급석으로 삼고자 한다.

II. 電子監視制度의 概要

1. 刑事政策的 意味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일반적으로 시설내 처우, 사회적 처우(또는 중간처우)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한편 외국어인 Intermediate Sanction or Punishment를 우리는 보통 중간처벌이라고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논자에 따라 개념 설정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시설내처우인 구금형과 사회내처우인 보호관찰처분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처벌형태를 일컫고 있다. 따라서 의미의 廣狹에 따라서는 중간처우개념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체형벌(Alternative Sanction)이라는 개념과도 마찬가지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중간이라는 개념은 범죄자에 대한 처우행위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소적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범죄자가 교정시설내의 엄격한 統制로부터 사회내의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통제의 강약관점으로 볼 때 중간의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엄격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간처벌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판결전전환(Preliminary Diversion), 벌금형(Fines), 배상명령(Restitution), 가택구금(House Arrest), 가택연금(Home confinement),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 수강명령(Day Reporting), 집중 또는 밀착보호관찰(ISP : Intensive Surveillance Probation), 충격보호관찰/병영캠프(Shock Incarceration/Boot Camp)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중 가택구금 및 연금은 보호관찰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전자감시·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병영캠프 등은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내처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처우방법의 다양성을 들 수 있는데 전자감시제도는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 중에서 과학화 및 정보화의 潮流에 편승하여 시설내처우의 강력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어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보호관찰제도 실시 이후 그 대상자의 수가 다음 표와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이는 법원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비교적 혁신적이면서도 처벌방지효과가 있고, 자유형에 비하여 국가예산을 큰 폭으로 절감하면서도 동시에 범죄행위자에 대한 응분의 처벌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처분별 현황을 다음 <표 2>에서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 대상인원이 46,637명으로 1997년의 30,551명에 비하면 52.7%가 증가하였으며, 수강명령의 경우에도 1998년의 경우 4,402명으로 1997년의 2,606명에 비하여 6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급증이유는 1997년부터 과거 소년범에게만 국한되었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성인범 집행유예 처분자들에게 확대실시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중간처벌영역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전자감시제도 도입에 대한 형사정책적 의미는 가일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2. 沿革

전자감시의 사상적渊源은 1964년 하버드대학의 「실험심리에 관한 과학위원회」 소속 Ralph Schwitzgebel 박사의 기계론(機械論)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chwitzgebel 박사를 중심으로 한 관련 Member들의 제창에 따라 정신병원퇴원자 및 교도소가석방자들에게 BT-R(Behavior Transmitter - Reinforcer)이라고 불리우는 소형수신기를 휴대시켜 그 행동을 감시통제한 바 있었는데, 당시 대량 수송시대를 맞이하여 수송네트워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버스나 전차의 위치 및 흐름을 감지하는 시스템의 등장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이러한 아이디어는 메사추세츠주의 케임브리지에서 실험적으로 채택·실시되었으나 실험에 참가했던 전파자, 정신장애인, 학생 16명중 4명만이 겨우 계속적 실험의 대상으로 잔류하고 나머지는 실험에서 이탈함으로써 '대상자의 실험 순응 실패'로 말미암아 전자감시를 확대실시해 보려고 했던 움직임은 한 때 좌절되고 말았다.

그 후 미국에서의 전자감시제도는 약 20년간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고, 전자감시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3년 뉴멕시코주 알바카키의 J. Love판사가 보호관찰대상자의 발목에 담뱃갑 크기의 전자팔찌를 부착시켜 감시함으로써 구금형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Love판사는 당시 관할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폭동의 빈발을 우려하여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자감시제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이 분야에서의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1984년 12월에 미국 최초로 계속적으로 작동되는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개시한 비영리기업 Pride社가 플로리다주 Palm Beach County에서 설립되기에 이른다.

플로리다주는 일찍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고민하던 중 교정보호법을 제정하고 구금형의 대체수단을 확대·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전자감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주가 된다.

Pride社는 1984년 이전에도 약 20년간에 걸쳐 경범죄·교통범죄·재판전 조정을 실시한 경

험 뿐 아니라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School이나 약물남용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 본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미국내 전자감시제도의 모델이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감시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교정연감에 따르면 1996년 현재 11,553명의 早期 釋放者가 시설내 구금의 대안으로써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고, 31,23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역시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전자감시제도는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확고부동한 성공작품이 되고 있다.

3. 電子監視方法의 類型

범죄자를 전자감시하는 방법은 觀點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자공학자체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이 개발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기본형 3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통례이다.

(1) 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

이 방법은 감시대상자의 신체부위에 송신기를 부착시키고 이 송신기가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무선신호를 자동적으로 발하게 하여 所在地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2)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

중앙감시컴퓨터가 임의로 대상자의 외출금지시간에 거주지에 전화를 자동적으로 발신하여 소재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대상자에게 일정한 질문을 하여 컴퓨터가 기억하고 성문(聲紋)과 일치하는가도 확인한다.

(3) 탐지시스템(Tracking System)

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송신기가 발하는 무선신호를 부근을 巡迴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의 차량에 있는 수신기가 탐지하여 소재를 확인하고 추적하는 방식이다.

위의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Active System이며 이외에 대상자에 부착된 송신기가 발하는 무선신호를 대상자 집의 수신기가 받아 감시통제소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기본적 상시신호 송·수신방법 외에 과학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특별히 고안된 전자프로그램에 의한 대상자 확인 전자시스템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음성확인방법, 화상확인방법, 알콜측정방법,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 방법(GPS) 등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는 더욱 더 고성능화, 소형화, 간편화된 전자감시기기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감시대상자 및 범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전자감시방법이 빠른 속도로 강구될 것이다.

III. 運營實態 및 評價

1. 運營實態

미국은 모든 행정조직이 완전히 地方分權化된 체제로 되어 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제도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대도시를 모델로 組織과 機能을 파악하면 쉽지 않

겠느냐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의 조직이나 제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미국에서는 연방(Federal), 주(State), 도시(City), 군 또는 자치정부(County)등 다양한 수준의 행정조직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수준의 행정단위라 하더라도 규모와 기능, 관할권은 물론이고 그 역할과 임무 및 규제대상 등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로 다양하여 전형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자체도 불가능하다.

전자감시프로그램의 경우 역시 연방, 주정부 및 각종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 각각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과 편제도 51개주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7년에 미국전역에서는 21개주가 총 54개의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1989년에는 37개 주와 컬럼비아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약 6,500명까지 그 대상자가 확대 실시되었고, 1995년에는 50개의 주가 각자 독자적으로 고안된 전자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 프로그램수는 일일이 해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역시 각 주 중에서도 현재까지 플로리다주가 가장 발군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행초기인 1987년의 전자감시 프로그램 실시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대체로 연방차원의 전자감시는 연방대법원 행정처소속의 保護觀察所에서 통일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정부차원의 전자감시는 주정부내의 가석방대상자를 중심으로 行政府에 소속된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역시 각종 지방자치정부 수준에서 주정부와는 독자적인 조직과 편제로 다양한 형태의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전자감시프로그램을 받을 경우에는 재판시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를 통해 전자감시프로그램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로 제한하여 대상자의 동의와 전자감시장비 및 운영비용의 負擔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감시시스템의 운영은 용역의 형태로 민간회사가 전자감시장비의 유지·보수와 모니터링을 담당하여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분권화의 대표주자격인 미국은 그 특성상 전자감시와 관련된 통계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거의 없으나 1990년도에 지방정부(county)차원에서 조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987년 826명으로부터 1988년 2,277명, 1989년 6,490명, 1990년에는 약 12,000명이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997년 미국교정연감의 발표에 따르면 11,553명의 조기석방자가 1996년 현재 시설내구금의 대안으로서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고, 31,23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의 일부로 또는 다른 보호관찰프로그램과 병과되거나 단독으로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적용기간은 통상 12주에서 15주 사이인 것으로 조사·보고되고 있다.

미국사법통계청(BJS)의 보고에 의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在所者數는 1980년 319,600명에서 1994년 999,800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각종 지방자치정부의 재소자수는 같은 기간에 182,300명에서 483,700명으로 16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상술한 전자감시 대상자의 증가율과 대비해 보면 미국의 교정정책에서 전자감시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감을 실감할 수 있다.

2. 評價

(1) 費用과 費用效率에 대한 評價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질문중의 하나는 비용에 대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것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의 경우 구금에 비교하여 비용효과가 탁월한 것이 입증되고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러한 비용효과는 대상자가 시설내구금과는 달리 사회내처우시 전자감시비용(Electronic Monitoring Fee)과 보호관찰부담금(Probation Fee)을 납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자감시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설수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범죄자가 보다 더 비구금적인 중간처벌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附加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전자감시제도의 연구자들은 전자감시장치비용만 算定하면 안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인적자원 및 기반시설투자비용(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용 및 운영비용 등)과 기타 부대비용을 총 합산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정한 총비용 규모는 최대한 시설수용비용의 3분의 1까지 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1993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와 미시건주의 시설수용 비용 및 각종 중간처벌비용을 대비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소요비용 산정체계 외에 +요인과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데 + 요인으로는 전자감시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수반되는 중앙컴퓨터 시스템의 임대 및 구입에 관한 고액의 준비비용, 유지보수비용, 限界費用,豫測費用 등의 발생이 그것이요, -요인으로는 대상자가 지불하는 통상필요비용을 들 수 있다. 1989년의 예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전자감시이용지역의 약 3분의 2가 통상전자감시에 필요한 비용을 대상자에게 부과하였는데 1일 1달러내지 15달러로써 지역에 따라 모두 상이하지만 평균 1일 5달러 수준이었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보호관찰 감독비용으로 重犯罪者에게는 1개월에 50달러, 경범죄자에게는 40달러, 그리고 전자감시에는 1일 7달러를 부과하였다.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운영은 각 주마다 또는 각 지방자치체마다 그 입장이 相異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용기준은 없으나 시행기관이 어느 정도 절약하느냐, 비용산정체계가 합리적이냐에 따라 소요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可能性은 많다. 어쨌든 전자감시에 소요되는 비용만 가지고 논한다면 정규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2) 電子監視의 運營에 對한 評價

Renzema와 Skelton(1990)은 전자감시운영에 있어 두 가지의 중대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감시장치의 기능불완전이요, 그 다음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 수의 부족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Baumer와 Mendelsohn(1989)은 전자감시의 技術的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전자감시장치가 잘 작동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기술상의 동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시행기관과 감시장치 납품업체 또는 운영위탁업체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協力 問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Erwin : 1990) 일단 기술적인 문제점을 제1차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다.

전자감시를 실시함에 있어 전자감시대상자들로부터 많은 이의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또한 看過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최근 Pride社의 한 조사에 의하면 전자감시대상자들이 이의가 있어도 전혀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전자감시를 특별히 관대한 刑罰이라고 전혀 생각치 않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감시 가석방대상자들은 3분지2 정도가 전자감시를 Halfway House 보다도 더 징벌적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다(Beck, Klein - saffran, wooten : 1990).

아울러 전자감시는 다른 대응체제와는 달리 대상자의 준수사항위반시 신속한 대응에 따라 프로그램의 實效성이 높아지는 처벌 유형이기 때문에 감독직원 내지 관리자의 24시간 대응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대응체제는 신호정보 등의 처리 및 모니터링과 컴퓨터 운영을 관리하는 부분, 보호관찰차량 및 인신확보장비와 인력을 갖춘 대응팀 부분, 충분한 교대인력의 확보가 선결과제가 된다. 그 밖에 전자감시프로그램 적용기간의 적정화 문제, 대상자의 특성(범죄유형별,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한 처우의 문제 등도 전자감시 운영시 중요한 評價尺度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3) 電子監視에 의한 處遇效果 및 影響 評價

보호관찰 전기간에 걸쳐 전자감시 대상자의 43%가 1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여 법원에 소환당한 경험이 있고, 그 중 절반 정도는 새로운 위반행위를 하며, 또 절반정도는 기술적 위반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는 최근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내 처우로서의 전자감시제도 역시 그 處遇效果가 썩 유토피아적인 것은 못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예로 보아 전자감시 제도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성공과 실패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보호관찰 전 기간을 完了한 사람들의 처우 효과를 시설내 처우효과 등과 비교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전자감시제도가 보호관찰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타 중간처벌과 병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감시제도만을 통한 처우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 동안 전자감시프로그램의 적용사례중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것으로는 인디아나주의 Fort Wayne County Project, Southern District of Mississippi Project, 플로리다주의 Community Control Project, 아리조나주의 Pima County Project 등을 들 수 있고, 실패사례로는 일리노이주의 Cook County Project,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규명해보는 대조연구로는 위스콘신주의 Kenosha County Project 등을 들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라는 개념은 전자감시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한 상대적인 우열개념에 불과하며 성공 / 실패를 불문하고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가 전자감시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많은 資料와 經驗을 제공하는 공헌을 하였다는 데에는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IV. 基本的 適用 障碍

1. 電子監視制度의 本質的 限界 認識

S. Cohen은 사회내처우에 본질적으로 중대한 위험성이 3가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불명료화인데 처우의 대상을 사회와 벽으로 차단되어 있는 정규 교정시설로부터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형벌로서의 한계가 애매하고 막연해질 소지가 많다.

둘째는 개입의 확대화로서 범죄자를 국가의 통제메카니즘에서 해방시키고 사회내에서의 감

시체제를 이용하게 되므로 국가형벌권 개입의 無限한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인도주의적 위장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회내처우는 사회전체를 교정시설화 할 수 있는 가혹한 것이라고 하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고도로 공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사회내처우를 잘못 운영하면 전근대적인 촌락의 부활을 초래하여 時流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 역시 사회내 처우의 일환이므로 사회내처우의 3가지 본질적 한계에 대체적으로 부합하게 된다.

이러한 本質的 위험성 내지 한계는 향후 전자감시제도를 둘러싼 모든 측면에서 Criteria가 되어야 하며, 이를 극복하기 못할 경우 인류는 자유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토피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에 의하여 유토피아니즘과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手段과 目的의 交換의 違리와 일에 對한 理論의 기틀 마련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社會復歸理論과 實務에 대한 비판은 保護觀察制度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복귀대신 형벌의 공정성 그리고 정당한 처벌을 강조하는 소위 정의모델(Justice Model)에 의하면 보호관찰은 사회복귀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제재 내지 형벌의 일종이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주로 자유의 제한과 보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취될 경우 대상자의 사회적 책임은 완수된다. 따라서 비록 보호관찰을 통해 대상자의 행동양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호관찰의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고, 주목적은 제재라고 한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통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手段의 요소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의 주목적이 형벌이며 제재라고 한다면 전자감시 역시 그 본질적 성격은 刑罰이요, 制裁가 된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우리가 전자감시제도를 평가할 때 가장 큰 이점으로 경제적 이유를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감시는 헌법적 질서 하에서 작용되는 교환모델이다. 개인들은 일정한 질서나 구조 안에서 교환에 참여한다. 만일 우리가 거래의 상호작용을 일반화하고 다수의 참가자에게로 그것의 적용을 확대한다면 법제화의 적절한 기준으로서 정치적인 自發的 동의를 구체화하는 관계로 사회적 혹은 정치적 상호의존성을 설명하고 도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전자감시는 효용주의 대 계약주의의 기로에 서 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효용주의의 테두리 안에 더 깊숙이 발을 디디고 있는지도 모른다. 상술한 두 가지의 관점에서 비판해 볼 때 이제는 확실하게 전자감시의 본질을 수단에서 목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헌법적 질서하에서 작용하는 계약주의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효용주의가 과연 교환적 Paradigm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심각하고도 철저한 이론적 전개와 철학적 사유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전제적 기초가 결여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전자감시와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 즉 행복추구권, 평등권, 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고전적 쟁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된다. 電子監視對象者 選拔 문제나 전자감시를 통한 교정효과 측정의 문제 역시 전자감시제도가 스스로의 목적성을 회복할 때 그 순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電子器機의 脆弱性 & 對備한 技術的 Infra 構築

전자감시는 기계라는 物理的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전자감시의 기술적 모체가 되는 전자기기는 통상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네트워크가 자연적 또는 물리적인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즉 전송로에 들어오는 外部로부터의 노이즈(타기기의 전원 스위치 on/off, 정전, 번개)에 노출되어 있고 정보의 보존, 축적매체의 주류는 자기(Magnetic)로서 물리적인 침입에도 약하다.

둘째, 인위적인 공격에도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자 정보 誤濫用이나 외부자에 의한 해킹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컴퓨터기술의 진보는 눈부시게 빨라서 이와 같은 脆弱성을 최대한 커버하고 있으나, 발생가능한 모든 기술적 事故에 대비한 기술력 확보가 수반되지 않고는 전자감시제도가 질서유지자의 기능에서 질서파괴자의 기능으로 오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호정보 등의 처리 및 모니터링과 컴퓨터 운영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한 Infra가 24시간 全日 대응체제로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된다.

4. 國民의 認識 提高

사회의 변화과정을 수용해야 하는 사회내처우의 특성상 일반시민이 전자감시제도에 의한 처우과정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참여하는 것은 제도도입 및 정착의 필수요소가 된다.

더욱이 우리 국민은 전통적 유교관을 존중하고 전통적 형벌관에 익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 전자감시기능을 사기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 가지고도 형벌권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서 이탈하는 과행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리려는 경향도 강하다.

낮은 시민참여의식과 정당한 자기주장의 부족 및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의 부조화 등은 전자감시를 통한 처우제도를 순기능에서 역기능으로 작용케 하거나, 그 시행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자감시제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지역사회에 근간한 교정정책(Community - Based Corrections)의 첨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V. 結論

교정은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진다. 형사사법체계란 경찰 - 검찰 - 법원 - 교정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범죄사실에 대한 하나의 처리과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재범 및 누범범죄자는 다시 이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쳐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는 환류과정을 초래하게 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즉, 개개의 범죄사실(특히 초범)에 대하여 수사 - 기소 - 재판 - 처우라는 각 단계별 기능을 중심으로 고찰해 볼 때 교정기관은 최종기착지로 보게 되나, 재범 및 누범범죄자에게는 교정기관이 잠재적 출발점의 영역으로 작용하여 더욱 악화된 형사사법체계를 전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내처우는 물론이려니와 중간처우나 사회내처우가 갖게 되는 형사정책적 의미야말로 각별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현대 교정의 방향이 처우의 개별화, 처우의 다양화, 처우의 과학화에 있다는 것은 교정학계 및 실무계의 지배적인 담론이고, 이러한 처우방향의 첨단에 놓여있는 과제 중 하나가 전자감시제도에 의한 처우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제도가 가장 먼저 빌어하였고 운영경험이 풍부한, 명실공히 전자감시제도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험과 교훈을 정리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 의 전자감시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적이고 기본적인 적용 패러다임을 구상해 보았다.

선진국 중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이 비교적 늦은 영국의 경우, 전자감시제도의 인권 침해논란을 불식하고자 5년에 걸친 충분한 시험실시와 철저한 결과분석, 효과적인 제도 홍보, 충분한 여론 수렴 등의 사전준비 후 1999년 1월에 전자감시 가택통금 전국 실시, 1999년 12월에 전자감시 통금명령을 전국 실시하고, 2000년 중에는 이미 시험실시 중인 상습경범자, 벌금미납자, 보석자 등에 대하여 확대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하여 전자감시제도의 실시 목적과 이유의 명료화, 현실여건에 맞고 실시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의 필수적 획득, 집행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국민·법원에 대한 효과적 홍보 등을 조언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경험과 교훈, 영국의 제도도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성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실정과 토양에 맞는 효율적 전자감시제도 모형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